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이상은(동국대학교)

2025. 12.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주요 내용	3
3. 연구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6
1.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고시의 법적·제도적 배경	6
2. 학교안전사고 현안 분석	13
3. 선행연구 검토	19
III.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관련 국외 사례 분석	22
1. 주요국의 학교 안전사고 관련 지침	22
2. 종합	40
IV.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을 위한 초점집단면담(FGI) 결과 ..	43
1. FGI 개요	43
2. FGI 결과	46
3. 종합	96
V.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99
 참고문헌	 106
 붙임	 112

목 차

<표 I-1> FGI 참여 대상	4
<표 I-2> 연구 일정	5
<표 II-1>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2020년~2024년)	13
<표 II-2>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2020년~2024년)	14
<표 II-3>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2020년~2024년)	15
<표 II-4> 지급규모별 공제급여 보상 현황(2020년~2024년)	16
<표 II-5> 언론 보도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주요 사례(2023년~2025년)	16
<표 II-6>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요소(이정수 외)	19
<표 III-1>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 관련 주요국 사례 비교	42
<표 IV-1> FGI 구성	43
<표 IV-2>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FGI 주요 결과...	98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우리 사회는 학교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교육적 기반을 다각도로 구축해 왔음. 특히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로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은 사회 전반에 안전의 가치와 국가적 책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중대한 계기가 되었음. 이후 정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 3년을 주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또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마련하고 영역별 안전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제도적·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원격수업이 전면 실시되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학교안전사고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는 총 211,650건(100명당 사고 발생 건수 3.73)으로 전년(2023년) 대비 18,47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25).
- 또한 최근의 학교 안전사고는 단순히 양적 증가에 그치지 않고 사고의 유형이 다양화되며 심각성 또한 고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통적으로 체육 활동 중 부상이나 학교시설물 파손에 따른 안전사고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교내 외부인 침입, 흥기 난동 등 형사범죄 영역의 사건들이 학교 공간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학교 현장은 더 이상 외부 위협으로부터 분리된 안전지대로 보기 어렵게 되었음. 이처럼 학교에서의 안전사고가 해마

다 증가하고 있고, 학교 내외의 위험요인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며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관리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관련하여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2025년 7월 고시되었음. 지침은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에 따라 구분한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해당 지침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서 규정한 면책 요건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인식과 관련됨. 현장의 교사들은 “지침이 제시하는 조치의 범위와 수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제로 어느 정도의 조치를 해야 면책이 인정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즉 교사들은 지침의 이행 기준이나 대응 절차가 불분명하다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에게 ‘지침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음(드림투데이, 7. 15.).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면책 요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침 내에 구체적인 행동기준과 상황별 세부지침을 명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한국교육신문, 2025. 8. 13.).
-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다양성과 복잡성, 그리고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에 따른 사후 대응 절차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지침이 실제로 학교 안전사고 대응의 전 영역을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현행 지침은 기본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사고 발생 시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기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 사고나 복합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침만으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현장의 현실적 여건과 사고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보다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대응 체계로의 개선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중심으로 구성 체계와 내용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교사, 관리자, 교원단체 등 학교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현장 적용상의 문제점 등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주요 내용

가.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고시의 법적·제도적 배경 분석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제정된 법적 배경 및 제정 이후 관련 법, 제도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고, 지침의 주요 쟁점에 대해 분석

나. 학교 안전사고 현안 분석

- 최근 5년간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 통계 및 관련 언론 보도 등을 검토하여 학교 안전사고의 양상 및 유형, 발생 형태 등 확인

다.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관련 선행 연구 검토

- 교육기관 및 인접 분야의 안전사고관리 지침·매뉴얼 개발 및 개선 방안, 안전관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요구도 등과 관련한 연구 검토

라. 해외 학교 안전사고 관련 지침 분석

-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교육기관 안전사고 대응 지침 검토 및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마.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 주요 교원단체, 학교급별 일반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대한 이행 가능성,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한 지침의 개선 방안 도출

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제안

- 「학교 안전사고 관리 지침」과 관련한 현안 분석, 선행 연구 검토, 해외 안

전사고 지침 분석, FGI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하여 지침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적 개선 방안 제시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 목적: 국내외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현황 및 관련 법·제도 탐색, 학교 안전사고 현황 분석, 해외 학교 안전사고관리 대응 사례 분석 등
- 분석 자료: 학교 안전관련 법령, 학교 안전사고 현황 통계 자료 및 관련 뉴스기사, 안전사고관리 지침 관련 선행 연구 문헌, 해외 교육기관 안전사고관리 지침 및 매뉴얼 등

나. 초점집단면접(FGI)

- 목적: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
- 대상: 교원단체, 시·도교육청 장학사, 각급 학교 관리자 및 교사 등 총 22명
- 면담 시기: 2025년 7월 23일 ~ 2025년 9월 16일(총 7회기)
- 내용: 현행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현장 적용성에 대한 검토, 조항별 문구 및 용어에 대한 평가, ‘보조인력’ 관련 지침 수정에 의한 의견, 기타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논의 등

〈표 1-1〉 FGI 참여 대상

순번	일자	참여 대상	참여 인원
1	25.07.23.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안전업무 담당 장학사(1)	3명
2	25.08.04.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안전업무 담당 장학사(2)	2명
3	25.08.12.	유·초등 교사	4명
4	25.08.13.	특수학교 교사	4명
5	25.08.19.	학교 관리자(교장)	2명
6	25.08.26.	중학교 교사	4명
7	25.09.16.	고등학교 교사	3명

다. 연구일정

○ 본 연구의 진행 절차 및 일정은 <표 1-2>와 같음.

<표 1-2> 연구 일정

연구 내용	추진 일정(월)						
	6	7	8	9	10	11	12
연구 주제 확정 및 연구진 구성	●						
연구 계획 수립	●						
국내외 문헌 수집 및 분석	●	●					
전문가 초점집단면담(FGI) 구성 및 시행		●	●	●			
초점집단면담(FGI) 결과 취합 및 도출				●	●		
최종 보고서 작성						●	●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고시의 법적·제도적 배경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정 등에 관련한 내용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제3항 및 제4항에 제시되어 있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 이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2025년 2월 행정예고를 거쳐 2025년 7월 4일 제정되었으며(교육부 고시 제2025-19호), 이는 다음과 같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사고 유형”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말한다.
2. “안전사고 대응절차”란 상황파악·전파, 안전조치, 상황정리, 보고조치(사고통지)를 말한다.

제3조(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①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
3. 상황정리: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②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단,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3. 상황정리: 학교장은 환자 이송 및 보호자 인계 상황을 파악하고,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③ 생명위급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상황파악·전파: 최초발견자는 즉시 119 신고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2. 안전조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119구조대가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동행한 교직원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3. 상황정리: 병원 이송에 동행한 교직원은 이송 상황 및 치료 경과를 학교장과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보호자에게 환자를 인계 후 복귀한다.
4. 보고조치(사고통지):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보고 및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통지하고 학생들에게 공제급여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④ 각 항의 대응절차 중 1호와 2호는 현장 상황에 따라 순서를 달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 지침으로 활용됨.
- 한편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은 2024년 12월 신설된 조항으로, 학교장 및 교직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 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다음과 같음.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2.] [법률 제20669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⑤ 학교장 및 교직원 등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2. 20.>

-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자: 김문수(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2025년 4월 22일 발의되었으며 9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되었음(한국교육신문, 2025.9.2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31
----------	-------

발의연월일 : 2025. 4. 22.

발 의 자 : 김문수 · 허성무 · 조계원

박지원 · 민형배 · 강경숙

백승아 · 김준혁 · 김영호

고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을 “학교장, 교직

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생략) ⑤ <u>학교장 및 교직원</u>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법률 제20567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학교장, 교직원 및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u>은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

○ 상기 개정안의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음. 첫째, 학교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면책 조항의 적용 주체를 확대하여 기존의 학교장, 교직원뿐 아니라 제10조의4에 따른 ‘보조인력’을 포함하고 있음. 둘째, 면책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제3항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으로 변경하였음.

○ 상기 개정안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 판단기준을 추상적 의무 이행에서 구체적 지침 준수로 전환함으로써 현장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또한 적용 주체를 확대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 즉 보조인력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임.

- 이처럼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 등 주요 교원단체에서는 현행 지침이 교직원의 명확한 역할 규정과 상황 판단 기준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또한 사고 발생 시 교직원의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듀프레스, 2025.7.10.; 한국교육신문, 2025.3.26.; 한국교육신문, 2025.8.13.).
- 따라서 지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외 학교 안전사고 대응과 관련한 지침 및 매뉴얼 등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각급 교원과 학교 안전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교육 현장에서 지침의 수용 가능성 및 적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학교안전사고 현안 분석

- 최근 학교 안전사고의 발생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유형 또한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학교 안전사고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이에 본 절에서는 수년간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전반적 흐름을 진단하고, 각종 언론 보도와 사례 등을 통해 드러난 학교 안전사고의 주요 현안을 검토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가. 학교 안전사고 발생 현황¹⁾

- 2024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1,650건으로 전년 대비 18,473건 증가(9.6%)하였음. 학생 100명 당 사고 발생 건수 역시 2023년 3.35건에서 2024년 3.73건으로 증가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등으로 사고 건수가 급감했던 2020년에 대비, 2022년 이후 학교의 일상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교육활동이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표 II-1〉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2020년~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발생건수	41,940	93,147	149,339	193,177	211,650
전년대비 증감률(%)		▲122.1	▲60.3	▲29.4	▲9.6
100명당 건수	0.70	1.57	2.55	3.35	3.73

- 학교급별 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대체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024년에 총 발생한

1)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5). 2024년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 의 내용을 발췌·요약하였음.

학교안전사고 건수 대비 학교급별 비율은 초등학교 38.0%, 중학교 37.3%, 고등학교 19.5%, 유치원 4.6%, 특수학교 및 기타학교 0.5%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2〉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2020년~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유치원	6,022	(14.8)	6,180	(9.9)	9,501	(6.4)	9,861	(5.1)	9,802	(4.6)
초등학교	12,128	(28.9)	30,154	(32.4)	52,751	(35.3)	71,608	(37.1)	80,369	(38.0)
중학교	11,981	(28.6)	33,405	(35.9)	57,168	(38.3)	71,223	(36.9)	78,935	(37.3)
고등학교	11,191	(26.7)	19,610	(21.1)	29,363	(19.7)	39,133	(20.3)	41,215	(19.5)
특수학교	276	(0.7)	458	(0.5)	557	(0.4)	726	(0.4)	672	(0.3)
기타학교	162	(0.4)	340	(0.4)	485	(0.3)	626	(0.3)	657	(0.3)
계	41,940	(100)	93,147	(100)	149,339	(100)	193,177	(100)	211,650	(100)

- 다음 <표 II-3>에 사고유형별 발생 현황을 제시하였음. 먼저 사고 시간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체육 시간과 학교체류 시간, 기타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특별활동의 경우 그 비율은 낮으나 2021년 이후 점차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다음으로 사고 장소에 따른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체육·집회공간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교수학습 공간, 공용공간 순으로 확인되었음. 사고 형태에 따른 발생 비율의 경우 2020년~2022년에는 낙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23년부터 사고 형태 분류체계가 변경되어 ‘낙상’과 ‘신체에 스스로 충격을 가함(염좌)’가 분리되며 부딪힘에 따른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마지막으로 사고 당시 활동별로 사고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구기 활동이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발생 비율을 보였으며, 사고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었음. 이어 실험·실습 및 기타, 걷기·뛰기, 장난·놀이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3〉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2020년~2024년)

단위: %

유형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고 시간	체육	34.0	40.1	38.1	34.9	35.2
	학교체류	36.1	33.2	36.1	37.6	37.9
	창체	5.1	4.4	3.7	5.3	4.9
	특별활동	2.8	3.0	5.6	6.5	6.5
	등하교	6.5	5.8	5.0	4.5	4.5
	기타	15.5	13.5	11.5	11.2	11.0
사고 장소	교수학습	20.0	16.5	15.4	16.0	16.1
	체육·집회	57.4	62.1	63.1	60.9	60.7
	보건·위생	1.1	1.1	1.0	1.0	1.1
	공용공간	13.7	13.4	13.5	14.6	14.5
	(교외)문화·체육	1.1	0.9	1.1	3.3	3.3
	관라·행정공간 등	6.7	6.0	5.9	4.2	4.3
사고 형태	부딪힘(교통사고)	38.1	39.2	41.7	42.7	42.8
	끼임·눌림	1.4	1.5	1.5	2.2	2.4
	낙상	45.6	46.2	45.7	23.0	22.4
	신체에 충격을 가함(염좌)				22.1	23.0
	긁힘·베임·절단·찢림	4.5	3.9	3.6	5.1	4.7
	물림·쏘임 등 기타	10.5	9.2	7.5	4.9	4.7
사고 당시 활동	일반학습	2.9	2.4	2.2	5.5	5.5
	구기	32.6	36.5	37.7	42.1	41.8
	육상	3.1	3.5	3.5	4.3	4.5
	장난, 놀이	13.9	12.4	13.5	10.9	11.2
	걷기/뛰기	17.3	16.3	16.1	13.4	13.5
	실험·실습 및 기타	30.2	28.9	27.0	23.8	23.5

- 학교안전사고 안전 통계에서는 부상 정도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른 유형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발생 비율 역시 제공하지 않고 있음. 다만 보상 통계를 통해 부상 정도에 따른 발생 비율을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 규모별 공제급여 보상 현황은 〈표 II-4〉와 같음. 1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인 모든 연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제급여를 500만원 미만 지급하는 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9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4〉 지급규모별 공제급여 보상 현황(2020년~2024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0만원 미만	16,710	(42.2)	23,996	(45.9)	37,566	(45.1)	52,406	(44.5)	58,634	(44.3)
500만원 미만	22,659	(57.3)	28,033	(53.7)	45,547	(54.7)	64,930	(55.2)	73,336	(55.4)
1,000만원 미만	58	(0.1)	79	(0.2)	118	(0.1)	191	(0.2)	299	(0.2)
1,000만원 이상	140	(0.4)	118	(0.2)	111	(0.1)	159	(0.1)	136	(0.1)
계	39,567	(100)	52,226	(100)	83,342	(100)	117,686	100	132,405	(100)

나. 언론 보도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주요 사례

. ○ 학교안전사고 통계자료를 통해 전반적 사고 발생 추이 및 특성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사고의 발생 및 전개와 관련한 맥락이나 사회적 파급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 이에 본 절에서는 정량적 통계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언론보도에 드러난 주요 학교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안전사고의 발생 전후 맥락 및 확산 과정, 그로 인한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표 II-5〉 언론 보도를 통한 학교안전사고 주요 사례(2023년~2025년)

구분	주요 내용	출처
외부인 침입	◦ 대전 외부인 침입 흥기피습 사건 -고등학교 교무실로 외부인 침입해 교사 피습	파이낸스투데이(23.08.04.)
	◦ 경기 시흥 학부모의 교사 학생 폭행 시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 침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폭행 시도	mbc 뉴스(23.12.10.)
	◦ 경기 화성 강제전학 처분 고교생이 이전 학교 교사 협박 -학교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머니투데이(23.12.05.)
	◦ 부산 고등학교 외부인 침입 학생 추행 사건 -고등학교로 침입해 여학생 추행	KNN(25.04.29.)
	◦ 경기 일산 초등학교 무단 침입 -흥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피해자 없음)	아시아투데이(24.05.31.)
	◦ 충북 초등학교 침입해 60대 남성 자살 -초등학교 건물 내로 무단침입한 사실로 학교 안전 위협(구성원 피해 없음)	충청일보(25.05.21.)
	◦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하늘이 사건) -교사(명재완)의 학생 살해 사건	중앙일보(25.02.10.)
기타 교내 발생 범죄	◦ 청주 고등학교 흥기난동 사건 -17세 특수교육대상자(학생)의 범행으로 교직원 6명 부상	아이뉴스24(25.04.28.)

구분	주요 내용	출처
현장체험학습	◦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2022년 발생) -속초 노학동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버스에 치여 사고 -인솔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담임교사에게 유죄	국민일보(25.02.11)
	◦ 홍천 수학여행 버스 7중 추돌사고 -수학여행 버스 2대 등 추돌로 중학생 포함 약 80명 부상	시사뉴스(23.06.16.)
	◦ 대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4중 추돌사고 -앞 차의 급정거로 차량 4중 추돌, 학생 16명 경상	매일안전신문(25.09.16.)
등하굣길·스쿨 존 사고	◦ 대전 둔산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만취 운전으로 도로 돌진, 초등학생 4명 사상	YTN(2023.04.09.)
	◦ 부산 초등학교 인근 지게차 낙하물 사고 -지게차로 작업하던 중 낙하물 발생으로 초등학생 3명 사상	인사이트(23.04.28.)
	◦ 충북 제천 스쿨존 사고 -스쿨존 사고 후 운전자 바뀌치기 시도(초등학생 1명 부상)	YTN(25.05.28.)
	◦ 경기 양주시 학원 승합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아동과 충돌 후 뺑소니	국제신문(25.06.16.)
학교 시설물 관련 사고	◦ 여수 체육관 천장 붕괴 사고 -초등학교 수업 중 체육관 천장 구조물 붕괴로 교사와 학생 14명 부상	서울경제(23.05.12.)
	◦ 제주 초등학교 디바이더 추락 사고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디바이더(전동가림막)에 초등학생이 매달리다 추락	kbs뉴스(23.07.19.)
화재	◦ 경기 용인 초등학교 교실 화재 -용인 초등학교 교실 화재 발생으로 학생 14명 연기 흡입	오마이뉴스(23.05.16.)
	◦ 경북 경산시 중고등학교 기숙사 화재 -기숙사 2층 베란다 화재, 플라스틱통에서 종이 태우다가 발생	영남일보(23.12.13.)
	◦ 경남 통영 제석초 쓰레기장 화재 -학교 쓰레기장에서 화재 발생, 3명 연기 흡입	쿠키뉴스(24.03.19.)
	◦ 서울 성동구 중학교 조리실 화재 -급식 준비 중 화재 발생으로 10명 연기 흡입	FPN(25.03.31.)
	◦ 부산 초등학교 교실 화재 외 다수 -교실 내 어항 산소발생기에서 발화, 인명피해 없음	부산일보(25.06.05.)
실험·실습실 사고	◦ 서울 성북구 고등학교 과학 실험실 사고 -로켓캔디(설탕 주연료) 제작 중 비커 과열로 화재, 학생 1명 부상	뉴스1(23.08.24.)

- . ○ 언론 보도의 특성상 비교적 경미한 사고나 일상적인 안전사고보다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사건, 특히 중상 이상의 피해나 생명과 직결된 중대 사고가 주로 보도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대표적 사례로는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과 청주 오송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들 수 있음. 두 사건 모두 형사범죄의 영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을 벗어나 잠재적 위험이 존재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대중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으며,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와 위기 대응 조치의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의식을 환기시켰음.

- 한편 속초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한 학생이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은 학교 현장의 안전관리와 교원의 법적 책임 범위를 둘러싼 또 다른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음. 해당 사건 이후 인솔교사와 보조인력은 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1심 법원은 인솔교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보조인력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음. 이 판결은 교육현장에서의 법적 책임 한계와 위험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음. 교원단체 및 교육계 일각에서는 본 사건과 같이 예측이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까지 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을 제기하였음. 더불어 해당 판결 이후 교원들이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국적으로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음(서울경제, 2025.5.20.).
- 등하굣길과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역시 학교안전사고 중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유형임. 특히 2019년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사망사고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운전자의 약 75%가 해당 법률의 처벌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이코노미스트, 2025.10.21.). 이는 스쿨존에서의 교통안전 의식이 제도적 강화에 비해 운전자에게는 아직 충분히 내면화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또한 <표 II->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전히 스쿨존 내 학생 사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전반적 교통문화 개선 및 교육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함.
- 그 외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주요 학교 안전사고 유형으로는 화재, 시설물 관련 사고, 실험·실습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음. 이 가운데 화재의 경우 대부분 연기 흡입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이어졌으나 다른 유형에 비해 언론 보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화재의 발생 빈도가 높은 점도 있지만, 화재가 갖는 상징적 위험성으로 인해 사회적 주목도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화재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조리실, 쓰레기장, 교실, 실험실 등 학교 내 다양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단일 원인보다는 학교 시설 전반의 노후화, 관리 부주의, 안전장비 미비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3. 선행연구 검토

- 학교 및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대응체계 수립이나 관련 지침의 개발·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본 절에서는 검토 범위를 학교 현장에만 한정하지 않고, 교육기관 전반과 더불어 인접 분야까지 확장하여 관련 연구들을 폭넓게 검토하였음. 특히 도서관,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과 유사한 영역에서 수행된 연구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실질적 실행 주체인 교사의 인식과 요구가 지침의 개선 방향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들의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인식 및 요구를 다룬 연구들도 함께 살펴보았음.
- 이정수 외(2016)는 이용자의 안전과 도서관의 재난대비를 비롯한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였음. 이를 위해 국내외 도서관의 안전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분석하고 공공도서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였음. 이를 통해 도출한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음.

〈표 II-6〉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구성요소(이정수 외)

영역	항목	세부내용
1.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리 계획	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안전관리 평가 등
	안전관리 조직체계 구축	안전관리 조직체계, 상황별 연락체계
	직원 및 이용자 교육	소방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
2. 위기별 안전관리	자연재해	태풍·강풍, 낙뢰·정전, 홍수·호우·침수·누수 등
	안전사고	화재, 가스누출, 감전, 시설 및 물품 파손, 차량사고 등
	이용자 안전	전염성 질병, 정신질환, 관내 소란, 도난사고, 정보 자원 파손, 흡연, 음식물섭취, 애완동물 반입, 쓰레기 투기 등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장애 및 해킹, 개인정보보호
3. 정보자원 복구	도서·비도서자원 복구, 전자자원 복구	

영역	항목	세부내용
4.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관리·감독, 비상대응, 시설안전, 방화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 안전관리 계획 수립 영역에서는 위기별 발생 장소, 일시, 규모, 위기별 대응 조치, 위기별 예상 진행상황, 단계별 조치계획, 조직 및 상황별 연락체계, 직원 및 이용자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음. 다음으로 위기별 안전관리 영역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 사항을 포함하였음. 정보자원 복구 영역은 도서관에서의 위기로 인해 파손 및 훼손된 정보자원별 복구 요령 및 사후 처리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영역에서는 도서관에서의 위기별 안전관리 매뉴얼이 제대로 작성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 심우섭과 김상범(2023)은 고용노동부에서 범정부적 위기관리 체계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개발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음. 주요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위기징후 감시 단계에서는 재난 담당자들이 징후정보에 대한 수집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징후목록별로 감시하는 방안 및 수단을 마련해야 함. 재난 발생 시 위기 평가는 신속하게 실시하되, 기상조건, 사업장 점검결과,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평가에 임해야 하고, 관련한 민간 전문가 풀을 사전에 구성하여야 함. 위기경보 발령은 위기평가 결과에 따라 진행하되, 가급적 ‘심각’ 수준으로 높였다가 대응 후 1단계씩 내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다음으로 최근 발생한 인파 밀집사고의 경우 실무 및 행동매뉴얼에 대피요령, 훈련 등의 행동지침을 추가로 제시해야 함. 이 외에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구체적 대피요령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로 제안하였음.
-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대책 방안과 관련한 연구도 수행되었음. 이영미(2024)는 영유아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학습 안전관리 실천 현황과 교사들의 현장학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안전관리

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 연구를 수행하였음. 연구 결과, 교사들의 46.5%가 현장학습 중 안전사고를 경험하였으며, 설문에 참여한 교사의 67.5%가 사전답사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 이유로는 이전에 가본 곳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음. 현장학습 시 차량 이용 및 유아 안전수칙과 관련해서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멀미하는 유아의 멀미약 복용 확인, 음식 먹기 전 상태 확인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인식을 나타내었음. 현장학습 후 발생한 문제를 환류하는 활동도 전반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으나, 그 과정 중 일부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일부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안전 매뉴얼 프로그램 개발, 안전사고에 대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음.

- 방성민과 김창호(2015)는 수학여행 등 단체 현장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연구는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 고찰과 관계자 면담을 수행하는 질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음. 이를 통해 단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교통안전을 포함한 종합 안전망 구축, 시설·식품 등 사전 안전점검 서비스의 확대, 구조·응급대처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의 배치, 위기대응 체제의 개선, 대규모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KS기준을 이행하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음.

Ⅲ.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관련 국외 사례 분석

- 이 장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대응 및 관리와 관련한 해외 주요 국가의 지침 및 국내 교육기관의 학교 안전사고 및 체험학습 대응 매뉴얼을 분석하여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주요국의 학교 안전사고 관련 지침

가. 일본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2024)²⁾

1) 개요

- 일본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사건, 재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조사연구 회의’를 설치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학교 안전사고 사례를 수집하고, 학교 및 학교 설립자 및 교육위원회의 역할, 재발 방지 대책, 사고원인 조사 체계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이 처음 제정·발표되었으며, 이후 2022년 ‘제3차 학교안전 추진계획’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지원의 미흡, 사망사고 미보고 사례 등을 지적하며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와 같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3월에 지적사항이 반영된 개정판이 발간되었음.
-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사고 발생 시 아동 및 학생의 신체 안전 확보에 대비하고 책임 있는 조사·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더불어 피해자 및 보호자의 심리적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일본 문부과학성(2024). 学校事故対応に関する指針【改訂版】[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판]의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제시하였음.

2) 주요 내용

-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은 ‘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체제 수립-사고 발생 후 대응-사고 기본조사 실시-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피해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순서로 구성되어 학교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예방-대비-대응-회복(복구)의 일반 절차를 따르고 있음.
- 더불어 각 절차별로 학교, 학교 설립자, 도도부현(광역 자치단체), 국가의 역할 및 실행사항 등을 다룸으로써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부서의 협력 체계를 명시화하고 있음.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사고 발생의 사전 예방

- 사고 발생의 미연 방지를 위해 사고 사례 공유 및 활용, 각종 매뉴얼 작성 및 재검토, 교직원의 관련 역량 제고, 안전 점검 실시, 안전 교육 충실화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1) 사고 사례 공유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를 비롯,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사고 직전의 위험한 상황(히야리-핫토, ヒヤリ・ハット, Hiyari-Hatto)과 관련한 사례의 수집·공유와 관련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음. 사고 발생 사례와 관련하여 각 기관별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각 단위학교는 각종 사고 사례 및 유사한 사고의 미연 방지를 위한 사례를 교직원과 공유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도도부현에서는 관내 학교 사고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단위학교에 제공하여야 함. 국가에서는 본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된 사고 조사에 대한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학교 설립자 및 학교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2) 관련 매뉴얼 작성 및 검토

-학교보건안전법 29조에 따라 학교는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할 의

무가 있음. 이 절에서는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 <위기관리 매뉴얼 평가-재검토 가이드라인>, 학교안전 포털사이트 등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안내하고 있음.

(3)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심리적 케어 및 보호자 지원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는 자질을 갖추어야 함.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교직원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수(단계별 위기관리 대응, 각종 안전 조치(응급처치법, 아나필락시스 쇼크 대응, 사고 기초조사 방법), 안전 환경 정비 등)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에서는 교직원 연수의 충실화 및 교직원 역량 강화의 내실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4) 안전 점검

-학교 및 학교의 설립자는 정기/임시/일상적 안전 점검을 통해 시설 및 설비의 결함을 파악하고 위험한 장소를 점검하여 개선해야 함. 특히 학교보건안전법 28조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학생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5) 안전 교육

-학교 안전을 위해 교직원의 연수뿐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행동을 익히는 학생 안전교육이 필요함. 학교는 안전 계획에 근거하여 구조 훈련 등 안전 관련 교육 및 실천을 이행하여야 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한 참고 자료를 안내하고 있음.

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전 대응 체제 수립

○ 이 단계에서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대응과 관련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역할 체계 정비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

- 학교장이 책임자가 되어, 위기 대응 시 교직원 간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학교 전체가 일체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을 안내함. 학교장 및 교직원뿐 아니라 보호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함. 사고 및 재해 발생 시의 대응에 대해 사전에 보호자와의 공유가 필요하며, 각 지역의 경찰서, 소방서, 방재 담당 부서, 인근 학교, 의료기관, 기타 학교 현장과 관계 있는 단체 등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여야 함.
- 더불어 학교는 연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안전교육, 안전점검, 교직원 연수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도도부현 등 담당 부서에서는 관할 학교들의 계획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 상세조사위원회 수립 등 학교의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두어야 함.

다) 사고 발생 후 대응 흐름

- 이 단계에서는 학교 안전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 시기(~사고 후 1주일 정도),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과 관련한 지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1)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

- 응급처치 실시: 최초 발견자는 피해 학생의 증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실시함과 동시에 근처에 있는 관리자나 교직원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함. 지휘 책임자는 교직원에게 역할 분담을 지시해야 하며, 역할은 현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피해 학생 보호자에 대한 연락: 관련 사고에 대해 가능한 신속히 연락해야 하며, 이 때 사고의 개요, 부상 정도 등 최소한의 필요 정보를 정리하여 전달해야 함.
- 사고 현장에 있던 타 학생에 대한 대응: 가해 학생이 있을 경우 이 학생도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심리적 케어를 충분히 시행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현장에 있던 학생의 경우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세심히 대응해야 함.

(2) 초기 대응

- 위기 대응 체제 정비: 교장의 책임 하에 피해 학생 및 보호자 대응, 관계 기관 연락 등을 팀으로서 대응해야 함. 구조활동을 한 교직원의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대응: 학교는 사고 발생 직후 대응이 마무리된 후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거친 후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성실하게 대응. 학교의 설립자는 필요에 따라 중재·조정할 수 있는 지원인력 확보
- 학교 설립자 등에 대한 보고 및 지원 요청: 학교는 사망사고 및 30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중대 사고의 경우 학교 설립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함. 필요시 경찰 및 교육위원회에 정보 제공 및 지원 요청을 실시해야 함.
- 국가에 대한 보고: 사망사고 및 의식불명 등 아동 생명에 관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 및 도도부현 담당부서는 국가(문부과학성 등)에 보고해야 하며, 국가는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학교에 유사한 사고 예방 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초조사(기본조사) 실시: 학교 설립자는 학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기초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
- 보호자에 대한 설명: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학교는 타 학생의 보호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하며 보호자 간의 억측이나 왜곡된 소문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기자회견을 포함한 정보 공개 및 관계 기관과의 조정: 학교와 학교 설립자가 협의하여 언론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고 정보의 혼선을 방지하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도록 함.

(3) 재발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

- 상세조사 실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세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세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조사 실시(기본조사 및 상세조사)

- 이 단계에서는 초기 대응 및 중·장기 대응에 각각 해당하는 기본조사와 상세조사에 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1) 기본조사

- 대상: 학교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30일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거나 중증 질병을 동반한 사고,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인공호흡기 장착, ICU 입원, 신체 장애 발생 우려 사고를 포함한 경우
- 실시 주체: 학교가 원칙적으로 실시 주체가 되며, 학교 설립자의 지시 및 지원 하에 실시하여야 함. 사고의 중대성 및 복잡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도도부현 담당 부서에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음.
- 절차 및 방법: 관련 교직원과의 면담조사,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면담 조사, 관계 기관(경찰, 행정기관, 의료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

(2) 상세조사

- 개념: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 규명 및 대응에 대한 상세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학교 사고 대응 전문가 등이 참여한 ‘상세조사위원회’에서 실시되는 정밀한 조사
- 상세조사로 이행해야 하는 경우: 안전관리 체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고 발생 직후 대응에 부적절한 점이 있는 경우, 기본조사만으로 사고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재발 방지책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상세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등
- 상세조사위원회의 구성: 교육 경력자, 의료진, 학교 사고 대응 전문가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조사 대상이 된 사안과 특별한 이해 관계를 갖지 않은 자를 교직원 및 학회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

라) 재발방지 대책 수립·실시

- 이 단계에서는 향후 학교 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결과 및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학교는 상세조사위원회의 보고서의 제언을 바탕으로 교직원 및 인근 학교 교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실시 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도도부현의 담당 부서에서는 학교 설치자로부터 받은 보고서 제언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 내용 및 실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도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국가는 전국 학교의 사고 발생 현황, 본 지침에 따른 기본조사 및 상세조사 실시 상황, 재발 방지 대책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함. 그리고 이를 정리하여 학교 및 도도부현 담당 부서 등에 환류시킴으로써 유사 사고 예방에 기여해야 함.

마) 피해 학생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지원

- 이 절에서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설명 및 대응 창구는 일원화되어야 하며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함. 피해 학생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해 정보 공유 및 인계 체제를 구축해야 함. 사고가 발생한 피해 학생뿐 아니라 형제 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 지원을 실시해야 함. 필요시 재해 공제급여 청구 및 필요한 수속에 대해 안내해 주어야 함.
- 언론 보도(정보 공유) 및 상세조사 이행과 관련하여 학교의 설치자는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의향을 충분히 배려하여야 함. 또한 사고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및 외상 스트레스 장애(PTSD)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학생의 정신적 이상이 우려될 경우 보건교사 및 관련자가 기초적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진료기관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설립자는 보호자와 학교 간 소통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의 입장에서 현장 지원을 담당할 ‘지원 담당자’를 설치할 수 있음. 지원 담당자는 중립적 시각에서 보호자와 학교 양측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정리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 형성을 도와야 함.

나. 미국 「학교 및 지역사회용 위기 대응 가이드」³⁾

1) 개요

- 1990년대 후반 미국 콜로라도주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난사 사건 및 각종 테러 위협 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음. 이에 미국 교육부는 학교와 지역사회(경찰, 소방, 보건기관 등)가 협력하여 사전에 준비된 위기관리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용 위기 대응 가이드」를 발간하게 되었음. 지침의 최종 목표는 학교가 위기 상황에서도 학습 지속성과 공동체 안전을 보장하는 것임.
- 이 지침은 위기관리 사이클 4단계인 완화/예방(Mitigation/Prevention)-대비(Preparedness)-대응(Response)-회복(Recovery)에 따른 실행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테러에 대한 대응, 언론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생 인도 절차 등 위기 관리의 특정한 측면과 관련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가) 위기 관리 4단계

- 학교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학생·교직원·지역사회에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사건을 ‘위기’로 정의하고, 위기 관리의 4단계를 제시하고 있음. 이 네 단계는 순환적·지속적 과정이며, 위기 관리에 있어 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고 훈련 및 모의실습이 필수적이며, 명확한

3)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s(2007). Practical Information on Crisis Planning: A Guide For Schools and Communities.[학교 및 지역사회용 위기 대응 가이드]의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제시하였음.

의사소통 체계와 역할 분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완화 및 예방(Mitigation/Prevention)

- 완화: 학교 시설 및 운영 상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제거해야 함. 건물 내 화재위험 구역 점검, 유해물질 관리, 출입통제, 노후 설비 교체 등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음.
- 예방: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적·사회적 위험 요인을 줄이는 활동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안전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지원, 조기 경보체제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화 형성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

(2) 대비(Preparedness)

- 위기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음. 교장, 행정원, 교사, 간호사, 상담사, 지역 응급기관 담당자 등이 포함된 사건 지휘 체계(Incident Command System, ICS)를 구성, 위기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기반 훈련 및 연습, 커뮤니케이션 계획(학부모 및 언론 대응)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대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구성원들이 절차를 이해하고 즉시 행동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임.

(3) 대응(Response)

- 실제 위기 발생 시 학교가 즉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절차를 제공하고 있음. 위기를 인지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사건지휘체계(ICS) 가동 및 상황지휘소 설치, 구조대 연락 및 교직원의 담당 역할 수행, 학생 대피 및 출석 확인, 학부모 및 언론 공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짐. 명확한 의사소통 체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모든 절차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인명 보호가 최우선’ 임.

(4) 복구(Recovery)

- 이 단계에서는 위기 종료 후 학교가 정상 운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

를 다루고 있음. 복구를 크게 3단계(즉각적 복구, 중기 복구, 장기 복구)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예를 들어 즉각적 복구 단계에서는 피해 현장 복구, 안전 점검, 임시 수업 재개, 상담 및 추모행사와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기 복구에서는 교육활동 재조정,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장기 복구에서는 사후 평가, 정책 개선 및 훈련 계획 업데이트를 제시하고 있음. 3단계의 복구 경험을 다음 ‘예방/대비’ 단계로 연결하여야 하며, 위기관리 계획을 연례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나) 심층 주제

- 「학교 및 지역사회용 위기 대응 가이드」에서는 위기 관리 4단계뿐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실무 지침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단순한 응급상황뿐 아니라 학교 공동체에 정서적 충격을 주는 사건까지도 위기의 범위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경우 FEMA(연방재난관리청)의 각종 지침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위기 관리에서의 교장의 리더십, 테러 시 대응 요령, 자원봉사자 관리, 내부 및 외부 커뮤니케이션, 모의훈련(2단계 ‘대비’ 내용 심화), 지역사회와의 협력, 사건 지휘 체계, 언론 대응, 특수 학생을 위한 지원, 학생 인도 및 귀가 절차, 위기 후 지역사회 관리, 학생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개입 모형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다. 영국 「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⁴⁾

1) 개요

- 영국은 다양한 유형의 비상상황 발생 시 학교, 보육시설, 아동 사회복지 제공기관, 고등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특수교육기관(SEND) 등 다양한 교육 관련 기관 간 대응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 및 국가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을 최초로 발표하였고 2023년 5월 갱신되었음. 본 지침은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반적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교육 및 복지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비상 대응 과정에서 아동 보호 및 아동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비상사태 이후 실제 대응을 검토하고 이를 통한 개선점(lessons learned)을 도출하며 기존 비상계획을 갱신하라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비상상황 대응에 있어 순환적 개선 구조를 제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모든 교육·보육·아동 복지 기관은 사전에 학교 안전사고 발생이 대비한 비상계획을 갖추어야 함. 비상 계획은 공중보건 사건, 악천후, 교통사고, 화재, 위협, 건물 손상, 범죄, 사이버테러, 지역사회 재난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만큼 일반적이어야 하며, 방과후활동, 방학, 교외 체험활동, 공연 등의 상황을 모두 대비할 수 있어야 함. 비상계획은 역할 및 책임, 조치 유형 및 신속 실행 방안, 비상 상황 시 교육의 양과 질을 보장하는 방법, 통보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비상사건 발생 후에는 교훈을 도출하여 계획을 그에 맞게

4)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23).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for education, childcare, and children's social care settings[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의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제시하였음.

갱신하여야 함.

- 중대 공중보건 사건, 악천후, 보안 관련 사건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한 사전 계획 및 대응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비상계획 수립 시 감염병 확산 등 중대한 공중보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조치 및 전문기관에 조언을 구할 시점이 포함되어야 함. 영국에 등록된 의료인은 법적 감염병의 의심 사례를 관할 지방정부 또는 지역 보건보호팀에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님. 공중보건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교육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 경우 지역 보건보호팀이 직접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됨. 대규모의 공중보건 사건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교육 및 보육, 아동 복지 기관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 및 보육의 중단을 최소화하는 조치와 대체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등교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고품질의 원격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에도 필요 수준에 맞는 원격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함. 비상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이 집에 머무는 경우, 점심 꾸러미 제공 등 급식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취약 아동·청소년에 대한 대면 교육·보육을 우선시 해야 함.
- 이 외에도 비상상황 발생 시 기관의 아동, 청소년, 성인이 겪을 불안·스트레스·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을 겪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및 자원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또한 발달 및 지체 장애 등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소년의 비상상황 대응에 대한 대응, 보호자에 대한 안내, 추가적 지원, 교육 중단의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라.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 및 유아 발달부(DEECD) 비상 관리 지침」⁵⁾

1) 개요

- 호주 빅토리아주의 교육 및 유아 발달부(Department of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DEECD)에서는 학교 및 인가 보육시설의 아동, 청소년, 교직원, 자원봉사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교육 및 유아 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호주 빅토리아주 내의 모든 시설(학교 및 보육시설)은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비상관리계획(Emergency Management Plan, EMP)을 수립해야 하며, 본 지침은 각 시설이 자신들의 특성과 지역 여건, 지역사회가 가진 위험 요소 등에 맞게 자체적으로 EMP를 수립·관리·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음.
- 본 지침에서는 비상관리의 핵심 원칙 및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비상관리 단계별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더불어 위기 상황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지침을 수록하고 있음.

2) 주요 내용

- 본 지침에서 정의하는 ‘비상사태’는 인명 및 재산에 위협을 가하거나 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화재, 폭풍, 폭력행위, 감염병, 유해물질 누출 등의 예기치 못한 사건을 의미함. 비상상태 관리에 있어 안전, 모든 위험 포괄, 모든 기관과의 협력을 핵심 원칙으로 하며, 이 원칙은 이후의 모든 비상관리 단계의 기반으로 작용함.
- 비상 관리는 PPRR 모델(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Recovery)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

5) Victoria State Government(2010). DEECD Emergency Management Guidelines.[교육·유아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의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제시하였음.

- 예방 및 대비(Prevention & Preparedness) 단계에서는 비상 관리 계획팀 및 사건 관리 팀(Incident Management Team, IMT) 구성, 시설(기관)의 역량 분석, 잠재적 위험 및 위험 요소 파악하기, 비상계획을 관련기관(의료기관,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공유하기, 훈련 및 실습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비상계획(EMP) 작성 시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체계 수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음. EMP는 반드시 지역의 특성 및 위험 요소와 관련한 내용을 반영해야 하며, 교내 활동뿐 아니라 교외 활동도 포함해야 함.
- 대응(Response) 단계에서는 책임자(Incident Controller)가 비상사태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했을 때 시작되며, 책임자는 즉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해야 함. 비상사태 시 교내 봉쇄, 외부 봉쇄, 대피 등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 행동 지침을 교직원 및 학생에게 전달해야 함.
- 복구(Recovery) 단계는 시설 내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과 안녕을 회복하고, 시설이 가능한 신속히 정상 운영 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 EMSU(Emergency and Security Management Unit, 비상·보안관리부)는 시설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비상사태 후 장기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지역 사무소, 지방정부 등에서 전문가 배치와 지원을 도와야 함. 또한 이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 발생 시 학교 및 인가 보육시설의 보고절차, 사건 기록에 대한 보관 및 유지, 사후 검토 및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비상 관리의 4단계(PPRR) 대응 절차 이외에도 산불 및 화재, 폭풍·홍수, 감염병, 침입자, 범죄·폭력 사건, 지진, 유해물질 유출, 테러 위협, 교외활동 중 비상, 통학버스 사고 등 위험상황을 유형화하여 위험상황별 대응 절차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마. 캐나다 B.C.주 「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⁶⁾

1) 개요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Child care) 및 공공안전부(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olicitor General)가 2024년에 공동 발간한 「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는 학교와 경찰 간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여 학교 내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됨.
- 본 지침의 주요 목표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범죄 행위 등 학생을 위협하는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와 경찰 간의 역할과 의사소통 절차를 명확화하고, 위협평가(Threat Assessment, TA) 및 행동·디지털 위협평가(Behavioural & Digital Threat Assessment, BDTA)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더불어 학생, 학부모, 경찰, 학교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하고 봉쇄, 대피 등 학교 차원의 비상조치를 표준화하기 위한 학교와 경찰의 공동 운용 매뉴얼임. 단, 교내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징계 사안 및 교내 정책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은 본 지침의 직접적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음.
- 「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는 학교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청, 단위학교 및 경찰의 역할, 위협평가(TA, BDTA)의 3단계 대응체계, 대응이 필요한 사안, 정보공유 및 통보, 피해자 지원, 사고 조사, 학교 안전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주요 내용

가) 교육청, 단위학교, 경찰의 역할

-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를 위협하는 폭력 등에 대응하기 위한 다분야

6)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 Child Care(2024). Maintaining School Safety: A Guide for School and Police Personnel in B.C.[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의 내용을 정리·요약하여 제시하였음.

위협평가팀(multidisciplinary teams)을 구성해야 함. 각 기관은 BDTA를 수행할 책임을 가지며, 학교 내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야 함. 경찰은 학생의 폭력 및 각종 위협 사건에 대한 수사, 개입, 지원을 담당하며 학교와 협력하여 위협평가 과정 및 예방활동에 참여해야 함. 각 기관의 역할 분담의 기본 원칙은 ‘각 기관은 고유의 법적 책임을 지되 공동의 목적(학교 안전)을 위해 협력한다’ 임.

나) 위협평가(TA/BDTA)

- 위협평가(위험성 평가)는 학생 및 기타 개인이 폭력이나 피해를 가할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 평가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 조기 개입하는 것에 있음.
- BDTA는 기존의 위협평가 절차를 온라인 및 디지털 의사소통 환경에 맞게 통합한 것으로, 언어적·문서적·온라인 상의 표현 및 행동을 분석하여 폭력 위험을 시사하는 징후를 조기에 탐지·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 BDTA 모델에서는 위협 행동을 우려 행동(우려를 불러 일으키지만 즉각적 위험을 나타내지 않는 행위 및 의사표현)-고위험 행동(폭력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있는 행위 및 의사표현)-즉각적 위협(즉시적이고 심각한 폭력 위험을 내포한 행동 및 발언)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 위협평가는 학교, 경찰, 정신건강관련기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짐. 위협평가 완료 후에는 평가팀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입 내용 및 결과를 문서화하며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제공해야 함.

다) 대응이 필요한 사안

- 학교에서 발생하는 즉각적 위협, 고위험 행동, 우려 행동 등 위기유형별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예를 들어 폭력적 위협을 언급하거나 무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려는 계획을 공유하는 등 명확한 폭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고위험 행동이 우려될 경우 위협평가팀(TA Team)과 즉시 협의

해야 하며, 필요시 경찰이 참여할 수 있음.

- 대응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점 중 하나는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에서 우려되는 행동이 발생할 경우 위협평가 절차를 수행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 받아야 한다는 것임. 또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에 대해서는 이들의 발달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위협평가 시 문화적 배경과 생활하는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행동을 해석해야 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대표자와의 상담이 바람직함.

라) 정보 공유

- 책임 있는 정보 공유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경찰-지역사회 간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필요성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 간의 균형을 의미함. 정보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에만 공유되어야 하며, 이 정보는 관련성이 있고 정확하며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되어야 함.
- 다만 학교 안전에 중대한 위협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음. 이 경우 공유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학생 및 학부모에게 관련 정보가 공유된 사실을 통보해야 함.

마) 피해자 지원

- 사건 직후에는 신체적 안전과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비상절차를 따르고 응급 구조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함. 현장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는 정서적 지원을 가능한 빠르게 시작해야 함.
- 피해자 및 목격자는 불안, 죄책감, 위축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음. 학교는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어야 함.

- 경찰은 현장 안전 확보, 진술 청취를 시행하며 피해자를 피해자지원센터 등에 연계함. 지역사회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와 같은 정서적 회복 서비스를 지원해야 함. 학교는 일관된 일과 유지, 명확한 의사소통, 배려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며, 교직원은 침착함과 공감의 태도를 보여주어야 함. 트라우마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는 지속적 점검 및 상담을 통해 이를 식별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유지해야 함.

바) 위협과 관련한 학교 안전 조치

- 위협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봉쇄, 잠금 유지, 대피 등의 절차를 수행해야 함. 봉쇄의 경우 학교 내부 또는 인근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안전 위협이 존재할 때 시행되며, 교내 모든 사람은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으로 이동해야 하고 해제 신호를 줄 때까지 해당 구역을 떠나서는 안됨. 잠금 유지는 학교 외부에 위협이나 위험이 존재할 때 시행되며, 외부 출입문은 잠기고 건물 출입은 금지되나 교내 활동은 정상적으로 지속됨. 대피의 경우 화재, 폭발, 환경적 위험 등의 상황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건물을 떠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됨. 학교는 사전에 대피로와 집결지를 지정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을 실시해야 함.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익명의 위협 역시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함. 학교는 즉시 경찰 및 위협평가팀에 통보하여 위협 수준을 평가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함.
- 모든 비상상황 중에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유관 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언론 대응시 반드시 경찰과 조율해야 하며, 학교는 공식 대변인을 지정하고 검증된 정보만을 공개해야 함.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는 검토 회의를 실시, 환류하여 학교 안전계획을 갱신해야 함.

2. 종합

- 일본의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 미국의 「학교 및 지역사회용 위기 대응 가이드」, 영국의 「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 호주의 「교육 및 유아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 캐나다의 「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를 발행부처, 발행 목적, 적용 범위, 사건 대응 방식 등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표 III-1>에 제시하였음.
-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모두 학교 안전사고 관리와 관련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적 모델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사고에 대한 단발성 대응이 아닌, 학교 전체의 위기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구조를 체계화함으로서 학교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라 볼 수 있음.
- 해외사례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편성하고 이를 지침에 명시함으로써 사건 대응 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학교장이 책임자가 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전 대응 체제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미국 역시 대비 단계에서 교직원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관리팀(ICS)을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 호주는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 비상관리계획팀 및 사건관리팀(IMT)을 구성하고 체계적 역할 분배를 강조하고 있음. 대응 조직의 세부 구성에는 나라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총 책임자, 연락 담당자, 안전 담당자, 언론 담당자, 물적 지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있어서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관련 지침에서는 대체로 사건 대응의 전 단계(예방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관계자나 보건,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음. 캐나다 B.C.주 지침의 경우 경찰 및 정신건강 전문가 등과 함께 위협평가 팀을 구성하여 학교에서 중대한 위협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찰의 개입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호주 역시 EMP에 예방, 대응, 회복 단계에서 필요 시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안전관리 지침에서는 학교안전사고를 사건의 성격, 위협의 근원 등에 따라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어 폭력, 총기난사, 감염병, 재난, 범죄 및 테러위협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 상황이 각각의 유형으로 분류됨. 일부 국가에서는 각 유형별 대응 절차와 관련 서식 등을 지침에 함께 첨부하여 학교 현장에서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표 III-1〉 학교 안전사고 관리지침 관련 주요국 사례 비교

구분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문서명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2024)	학교 및 지역사회 위기 대응 가이드(2007)	교육·보육·아동복지 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2023)	교육 및 유아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2010)	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2024)
발행기관		문부과학성	교육부	교육부	빅토리아주 교육부	B.C.주교육부 & 공공안전부
목적		·학교 내 사고 예방 및 체계적 대응	·학교 위기 관리	·교육 및 보육 시설의 비상상황 대응	·EMP기반 위기 상황의 체계적 대비	·학교 내 행동 및 디지털 위협 감지 및 대응
적용범위	기관	·초·중·고 및 특수학교	·공·사립 초·중·고 전체	·유아~고등교육 및 사회복지기관	·빅토리아주 학교 및 인가 보육시설	·B.C.주 공·사립학교
	사건	·학교 내 사고 및 재난	·폭력, 자살위험, 총기, 자연재해 등	·감염병, 폭력, 재난 등	·재난, 감염병, 위협 등 비상사태	·위협 행동, 범죄위험, 디지털 위협 등
사전예방		·사고 발생에 대비한 사전 체계 구축 및 교직원 역할 분담, 방법 훈련 및 교육	·예방/준비 단계 (위험제거훈련, 시뮬레이션, 사전계획 수립 등)	·위험 평가, 대응 계획 수립, 관계 기관 협력	·사전 위험 식별 및 완화, 대응 시뮬레이션, 정기 훈련 등	·위협 징후 인지 및 판단, 사전 개입 조치
사건대응	상황파악·전파	·교직원 상황 파악 및 교장 보고	·ICS 체계 하에 위기 인지 즉시 경찰 및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	·대응 지휘자 지정, 교육청 및 보호자, 응급기관에 통지	·(사건유형별) 초기대응자에 전파	·학교/경찰/상담팀 간 정보 공유
	응급조치	·보건교사 및 담당자의 응급처치 수행	·응급처치 기본 교육 이수자가 시행하며 가능한 즉시 응급구조대 인계	·응급기관 우선 호출	·First Aid 담당자 또는 EMP 내 역할 지정자가 조치	·현장 상황에 따라 조치하며 위급상황 발생 시 경찰, 보건기관 연계
	상황정리	·보호자 연락, 다른 학생 보호, 관계 교직원 배치	·응급기록 및 현장 행위 문서화, 피해 학생 조기 귀가	·사건 유형에 따라 추가 위험요소 차단, 보호자 연락, 대피 등	·피해 현장 정리 및 인원 파악, EMP 상태 업데이트 등	·위협수준 평가 종료 후 경찰/보호자 연계 및 대응 보고서 작성
	보고	·교장→교육청, 문부성	·교장 또는 위기팀→교육구→주 또는 연방	·교장→교육청, 경찰 등	·교장 또는 EMP책임자→교육부, 경찰 등	·교장·TA팀→교육청, 경찰 등
사후회복		·상세조사위원회 수립, 교직원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회복	·학습복구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연계 등	·Lessons Learned 보고서 제출 및 비상계획 반영	·3단계 회복 시스템 가동	·BDTA 결과 기록, 정신건강 개입 가능
비고		·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대응 교사의 트라우마 등에 대한 사후지원 절차	·4단계 위기관리 모델 제시 ·ICS 지휘체계 도입 ·사고유형별 대응계획 마련	·Lessons Learned 제도 ·비상상황 유형 다양화	·PPRR의 4단계 대응 구조 ·위험상황별 대응지침 안내	·BDTA 체계 도입 ·다기관 협력 모델 구축

IV.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을 위한 초점집단 면담(FGI) 결과

- 이 장에서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결과를 제시하였음.

1. FGI 개요

- 주요 교원단체, 학교안전업무 관련 시도교육청 장학사, 각급 학교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FGI를 시행하였으며, FGI 참여자는 다음 표와 같음. 7개로 구성된 집단에서 총 22명이 참여하였음.

〈표 IV-1〉 FGI 구성

회 기	면담 일자	집단구분	참여자				계
			직위	성별	경력	구분	
1	25.07.23.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1)	교사	남	18년	A	3명
			교사	여	15년	B	
			장학사	여	4년	C	
2	25.08.04.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2)	교사	여	18년	D	2명
			장학사	여	2년	E	
3	25.08.12.	유·초등 교사	교사	여	20년	F	4명
			교사	남	13년	G	
			교사	남	23년	H	
			교사	남	21년	I	
4	25.08.13.	특수학교 교사	교사	남	5년	J	4명
			교사	남	9년	K	
			교사	여	13년	L	
			교사	여	20년	M	

회 기	면담 일자	집단구분	참여자				계
			직위	성별	경력	구분	
5	25.08.19.	학교 관리자	교장	남	5년	N	2명
			교장	남	8년	O	
6	25.08.26.	중학교 교사	교사	남	19년	P	4명
			교사	남	16년	Q	
			교사	남	15년	R	
			교사	남	18년	S	
7	25.09.16.	고등학교 교사	교사	남	18년	T	3명
			교사	남	19년	U	
			교사	남	10년	V	

- 「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본 FGI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교사, 교원단체 관계자, 그리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 및 체험학습 담당 장학사가 참여하였음.
-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학교 관리자 집단은 교육부와 각 교원단체의 추천을 통해 섭외하였으며, 학교급별 및 특수학교 교사 집단은 교육부 정책 실무자의 추천을 바탕으로 1차 섭외 후, 스노우볼 표집 방법을 활용하여 참여자의 추천을 통해 교사를 추가로 모집하였음.
- 참여자 섭외는 교직 경력을 포함해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학교급·학교유형·지역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자 하였음.
- FGI는 2025년 7월 23일부터 2025년 9월 16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총 7회기 진행하였으며, FGI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대한 개선 방안

- 실제 학교 안전사고 대응에 있어 지침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전반적 평가
- 지침 조항별 문구 및 용어에 대한 평가(용어의 불분명성, 모호성 등)
-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조·지원하는 보조인력의 면책적용 기준 규정 포함(학교안전 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대표발의, 2025. 4. 22.))과 관련한 지침 수정 및 개선에 대한 의견
- 기타 지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

② 학교 안전사고 관리와 관한 의견

- 학교급별 특성 및 학생 연령·발달수준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 유형 및 특성, 고려 사항 등
- 현장의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있어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등

- 수집된 자료는 면담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한 후 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음. 전사 자료는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연구진의 교차 검토와 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검증함으로써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Creswell & Miller, 2000).

2. FGI 결과

가.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그룹(1)

1) 면담 대상에 대한 배경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들은 총 3명으로, 교원단체 소속인 교사 2명 및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1명으로 구성되었음.
- A교사는 고등학교 교사 경력이 18년이며, A교원단체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음. 특성화고의 학생부장으로 오래 근무하며 학생생활지도 및 교권신장과 관련한 컨설팅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음. B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15년이며 현재 B교원단체 정책실 정책국장을 맡고 있음. C장학사는 중등학교 영어 교사로 교직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D교육청에서 교육과정 및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장학사 경력은 총 4년임.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제정 취지와 목적이 불명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한 교사는 이 지침이 학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인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인지, 또는 법적 분쟁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음.
- 또한 지침의 내용이 ‘평이하고 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하며, 실제 교사들은 이미 사고 발생 시 병원 치료 여부 판단, 응급조치, 보호자 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음.

지침 자체도 사실 상당히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거고 학교 현장이 이 정도는 다 진행하고 있고...(중략)...저희 교육청에서도 안전과에서 다양한 영역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안전사고 관련된 매뉴얼도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정부 지침이라 그런지 교육부에서 고시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어서, 학교에서 이것을 받았을 때 두분 선생님이 느끼시는 것과 같을 것 같고, 저도 일부 영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D교육청 C장학사)

사실 이 안전사고관리 지침 내용 자체도 굉장히 평이하고 그냥 일상적인 내용을 글로 담았다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지금도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정도를 파악하고 나서 안전 조치를 하고 상황 정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알리고 보호자에게 알리고..일상적으로 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교사가 늘 수행하면서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그 결과에 대해 요즘에는 점점 더 법적 분쟁으로 가고, 그 책임을 교사에게서 찾아서 교사가 어떤 일종의 과도한 책임을 지게 되고...(후략). (B교원단체 B교사)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한 교사는 지침에서 제시한 안전사고 유형 구분이 의료적 판단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음. 의료인이 아닌 교사가 이러한 구분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건교사만이 상대적으로 근접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임상 경험이 없는 보건교사의 경우에는 이를 정밀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음. 따라서 유형별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교사나 학교장에게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각 사고 유형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구체적 예시를 지침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음.

일반상해사고와 생명위급사고, 응급환자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 놓았는데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상 학교에는 없습니다. 학교는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보건교사도 요즘 임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일부 계실 수 있으나 그분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용어도 좀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A교원단체 A교사)

이 지침을 보자마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유형) 내가 구분하라고? 이 얘기가 먼저였어요. 아이들이 다쳤을 때 부모님들의 민원으로 발생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부모님들이 봤을 땐 이거는 병원 치료를 하든 어떻게 선생님이 좀 더 세심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 정도는 괜찮다 하고 넘어가서 너무 관심이 없는거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특히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있거든요. 전문인이 아니다보니 보는 눈에 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병원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보건실에 가서 약을 좀 바르면 되는건지 이것 자체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생명위급사고라는 것을 여기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B교원단체 B교사)

- 관련하여 안전사고 유형을 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서 분류하는 기준과 유사하게 재난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학생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사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하고...(중략)...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등하곳길 교통 안전, 실습실 안전, 재난 안전 등 여러 분야가 있어요. 위생과 관련한 안전도 있고...보통 안전사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고를 당한 장소나, 사고를 당했을 때의 어떤 유형이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상해 정도를 가지고 간단히 확인하는 것이 맞을까 싶기도 합니다. (D교육청 C장학사)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대응절차에 있어 교사들은 역할과 책임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공통된 문제의식을 제기하였음. 주체를 단순히 ‘교직원’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절차가 부재하다는 것임. 또한 ‘가까운 교직원’, ‘적절한 처치’, 간단한 처치 ‘등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객관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교직원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 교사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행정실에서는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또 담임 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초적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를 해 주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A교원단체 A교사).

제3조 2항을 보면 교직원은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간단한 처치가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만약 교사가 법적 분쟁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생각했을 때, 이 간단한 처치라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요...(중략)...교사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는 또 아니다, 미비했다 라고 했을 경우 또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D교육청 C장학사)

(3) 기타

- 본 면담의 주요 참여자인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은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면책 조항이 지침과 연계되었을 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음.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이 법과 지침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지침은 기본 조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이행한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음.

학교는 학생들을 다루는 일이다보니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그냥 주로 거의 담임이 교사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교사는 아주 과도한 책임 속에서 도대체 뭘 어디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늘 혼란스럽죠. 그리고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부, 교육청,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늘 교사 개인에게 책임들이 그대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 선생님들은 지금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노력들에 대해 회의적이고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어요. (B교원단체 B교사)

만약 아이가 학교에서 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침의 내용을 정말 다들 이행하실테고, 이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이 그냥 넘어간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 봐요. 정말 이 법률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체험학습이든 교육활동에 대해 선생님들이 지침을 따랐을 때 그래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줄 수 있다면 정말 이 간단한 지침만으로 가도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D교육청 C장학사)

- 특히 지침 제4조의 내용은 결국 안전사고의 책임을 다시 학교장과 교사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하였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판단과 조치 여부가 다시 교사의 책임으로 귀결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였음. 또한 지침을 충실히 이

행했더라도 법적 면책이 보장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이 주의의무 소홀로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였음.

지침 말미에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이 지침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시도교육감이 만든 조례 역시 구체적 사안이 아니라 일상적 총론에 불과한 내용일 것이고, 결국 이 내용도 학교장의 책임 또 담당 선생님들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A교원단체 A교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침에서 모든 걸 규정할 수 없다 보니 늘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타'가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라고 하면 학교장에게 책임이 내려가고 그러면 학교장의 명을 받아서 또 업무를 한 교사에게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따르지 않았냐 따랐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따른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면책 되겠느냐, 지금 사실 그 선생님(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도 중과실도 아니고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이유로 그 선생님께서 유죄판결을 받으신 것처럼 이 지침으로 인해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걸 법정에서도 그렇게 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또 판례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거기 때문에...(후략). (B교원단체 B교사)

- 현 지침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교사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침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사의 책임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지침의 이해와 적용을 돕기 위한 표준화된 해설서·가이드북·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서 안전사고 관리가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초반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지침이 대부분의 학교에 보편 타당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표준화가 되어야 하나는 거죠. 국가 수준의 지침이라고 한다면 표준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우선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이드북이라던가 매뉴얼을 만들고 그 내용을 해설할 수 있는 영상이나 연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A교원단체 A교사)

- 이 외에도 B교사는 교사들이 지침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하였음. 지침의 내용적 한계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는 사회 문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이에 따라 현행 지침이 교

사의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실질적 보호장치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늘 좀 답답하기도 한데, 이런 지침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선생님들이 이 지침이 잘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늘 경험해왔던 것인데,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지침이라기보다는 이사람이 이거 했니, 안했니, 책임소재가 너에게 있었니 이거를 개인 교사에게 맡기려고 만든다 라는,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교사들이 이 관리 지침이 진짜 학교를 보호하고 교사를 보호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조금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B교원단체 B교사)

- 한편, 지침이 시도교육청의 조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시행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였음. 7월 4일 고시 당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고시 내용을 반영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교육부가 시행 준비 기간을 주거나 사전에 안내를 하지 않고 즉시 시행을 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음.

시도교육청별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7월 4일 발표할 당시에만 하더라도 고시를 반영한 조례 제정이 된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게 지금 7월 4일에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바로 공표를 할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발표를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아니면 이런 지침이 만들어질 예정이니 조례 재정을 빨리 해라, 그래야 학교 현장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공문으로라도 안내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없었던 거죠...(중략)...고시해서 내려보냈을 때 실제 적용이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제정해서 공표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고 나서 진행이 되었어야 하나는 거죠. (A교원단체 A교사)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학교의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의 분담이 보다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현재는 시설 안전 등 본래 행정·관리 영역에 속하는 업무까지 교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업무 과중과 안전관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학교 내 역할 체계를 재정비하고 교사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실과 교사들 간의 안전 업무 담당은 누가 할 것이냐, 또 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교사의 책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땐 행정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안전과 관련된, 시설 안전을 포함한 실험실 안전, 실습장 안전 관리 이런 것들도 모두 지금 교사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A교원단체 A교사)

- 현장체험학습의 보조인력과 관련해, 보조인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었음. 현재 제도는 예산을 학교로 직접 내려보내고, 인력 채용·급여·신청 절차·관리 등을 교사가 모두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추가적인 업무를 떠맡게 되는 현실이라고 보았음.
- 한 교사는 학교의 안전은 단순히 학교 내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 안전관리를 학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는 학교 내의 문제이기만 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학교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뭔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그냥 이런 일(사고)이 일어났을 때 (지침에서) 학교장은 이거하고 교직원들은 이거하고, 이 말 자체가 사실 너희가 처리하고 해결하라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후략). (B교원단체 B교사)

나. 교원단체 및 시도교육청 담당자 그룹(2)

1) 면담 대상에 대한 배경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들은 총 2명으로, 교원단체 소속 교사 1명 및 학교안전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1명으로 구성되었음.
- D교사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이 18년으로, 현재 C교원단체의 정책실장을 맡고 있음. E장학사는 중등학교 영어 교사로 교직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I교육청에서 학교안전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2년째 담당하고 있음.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D교사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과 학교안전법 개정을 연계하여 지침을 평가하였는데, 지침과 학교안전법이 사고 재발 방지나 교원의 면책 요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 미흡하며, 특히 현장체험학습과 관련된 교사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및 보호장치가 구체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 역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촉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시 교사가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핵심 쟁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음. 즉 현행 개정 법령과 지침이 현장에서 교사가 느끼는 부담감과 그와 관련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 학교 안전법이 개정이 되고 김문수 의원의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속초와 같은 현장 체험학습 사건이 만약에 김문수 의원의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이 된 이후에 생겨났을 때 그럼 선생님은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다 했을 때, 안전 사고 관리 지침을 다 따랐을 때 보호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여전히 이 법이 개정이 충분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법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전혀 선생님들의 불안감이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교원단체 D교사)

- 또한 현행 지침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고 ‘이전’ 단계인 예방과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교사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지적하였음. 특히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건처럼 법원이 교사의 ‘안전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근거로 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침에는 현장체험학습 전·중 단계에서 교사가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학생을 어떻게 인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안전사고 예방은 보통 현장체험학습 가기 전에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 번 안전교육이나 성교육 기타 여러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지침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일어나면 이 사고 이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만 나와있어요. 그런데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한 법정 쟁점은 사고 발생 전, 안전주의의무를 다했냐라는 거죠.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생들을 어떻게 인솔해야 하나, 혹은 안전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한다고...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모호함으로 남아 있고...(후략). (C교원단체 D교사)

- 현재 I교육청에서 현장체험학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장학사 역시 지침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음. 지침이 새롭게 발표되었지만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인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여 변화나 차별성은 크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지침에 제시된 절차만으로는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실제 I교육청에서는 사고 발생 시 교사, 관리자, 교육청 등 역할별 책임 주체를 구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지침은 이러한 역할 구분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교사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지침의 큰 틀은 적절하지만, 각 단계별로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세부 절차와 실행 지침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서 나오는 4단계에 관한 절차는 사실은 저희가 사고가 났을 때 이미 매뉴얼에 담겨져 있어서 이 절차대로 하고 있어요. 저희 매뉴얼(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이 지침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검토를 먼저 했는데, 순서나 이런 것들은 일치하는구나 하면서 조금 안심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침만으로는 학교에서 바로 따라가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중략)...학교에서는 이 지침대로 선생님들이 모든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 교사가 하셔야 하는 역할이 있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교육청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디테일하게 지침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 지침만으로는 선생님들은 또 고민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 지침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가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구요...(후략). (교육청 E장학사)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본 면담의 참여자 모두가 지적한 사항은 유형 구분의 어려움과 판단 주체로서 교사가 느끼는 부담감이었음. D교사는 지침이 제정된 후 교사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의견 중 하나가 바로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것이었음. 구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의 기저에는 혹시 교사의 잘못된 판단이 민원이나 소송 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음.

체육시간에 활동을 하다가 공에 팔을 맞아서 팔에 불편함을 느끼고 보건실에 갔을 때, 보건실에서는 뼈 엑스레이를 찍어 볼 수는 없으니 보건교사는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서 병원에 가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아이는 집에서 정말 지켜보다가 계속 아프면 가게되고, 또 어떤 아이는 하루 이틀 더 있다가 갈 수도 있고...이렇게 학생들마다 병원에 가는 기준도 다르고요.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학교에서는 자의적으로 너 병원 치료가 필요해 안필요해 구분해서 나눠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C교원단체 D교사)

생명위급사고라 해도 학교에선 도대체 어느 정도를 생명위급사고로 말하는거지라고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수치적인 정확한 기준이 있거나 혹은 더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는 이상은 학교에서 곤란할 수도 있으니 기준이 좀 명확하게 가야 될 것 같다...(후략). (교육청 E장학사)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대응절차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D교사는 학교급의 특성상 학생들이 가벼운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함에도, 지침에 따라 매번 상황전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실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음. 아이들이 다쳤을 때 최초 발견자가 담임교사인 경우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적인 상황전파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보았음. 즉, 지침의 절차가 현장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베이거나 해도 밴드를 붙이려 와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서 저학년 아이들을 담당할 때는 제가 아예 보건선생님께 간단한 응급처치도구는 받아서 교실에서 베었다 그러면 붙여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에 해당하는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초발견자가 저라면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해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발견자인 제가 바로 처치를 해야 하는건지...(후략).
(C교원단체 D교사)

- 이어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보고조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까지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규정은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밴드를 붙이는 정도의 사고는,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제가 전교생이 천명 정도 되는 학교에 근무했을 때, 하루에 보건실로 오는 아이들이 200명이 넘었거든요. 그럼 200건씩 매일 교장선생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처치한 것까지 하면 한 300건 정도를 교장선생님께 매일매일 이거를 처치했다 라고 보고를 해야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C교원단체 D교사)

- 이어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보고조치 절차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이 병원 치료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데 모든 사례를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또 교육청은 이를 보고받은 이후 어떤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였음. 이에 따라,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예시로 시·도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음.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보고해야 할 사안으로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동일 장소에서 같은 활동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바든 경우, 교통사고로 인명사고 발생...(중략)...많은 교육청에서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 지침은 이 기준보다 모호해요.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기준이라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C교원단체 D교사)

아이들 병원 자주 가요, 많이 가구요. 병원 가는 모든 사안을 다 교육청에다 보고를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또 교육청은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이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현장체험학습 관련해서만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아마 체육 활동 중에 일어나거나 각종 다양한 활동까지 확장해서 학교가 무조건 병원에 간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면, 자잘한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지침은 오히려 너무 명확하게 적혀있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구요...(후략). (I교육청 E장학사)

(3) 보조인력

-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의 안전조치의무 주체에 학교장, 교직원에 이어 보조인력까지 포함이 된다면, 지침에도 보조인력에 대한 자격, 의무,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보조인력을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시도교육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했냐?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조인력에 관한 자격도 김문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보조인력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보조인력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나, 인솔자와 학생 비율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하는가, 인솔자는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담았으면 하거든요. (C교원단체 D교사)

D선생님 말씀처럼 각자의 역할이 어느 정도는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칼로 자르듯이 여기부터는 네 일, 여기부터는 내 일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보조인력은 결국 보조자잖아요. 그러면 주 교육자인 우리 교사들이 어쨌건 이분들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적어도 보조자들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의 가이드가 있었으

면 좋을 것 같고요. (I교육청 E장학사)

- 보조인력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음 E장학사는 보조인력 간 역량 차이가 크고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보조인력의 채용과 교육 과정을 학교 단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또한 학교급별로 요구되는 보조인력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보조인력의 전문성과 역할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기타

- 앞서 전반적 평가에서 언급했듯 현행 지침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고 예방 및 대비 단계의 구체적인 행동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교사들은 이러한 사전 예방 단계까지 지침에 포함되어야 학교 현장의 사고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같은 사례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이전에 현장학습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절차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분명히 담겨 있어야 10조 5항이 개정된 의미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교사들 사이에 많이 있었습니다...(중략)...현장학습 중 안전관리는 일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다면 이것이 시행령이나 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여전히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C교원단체 D교사)

- 학교 밖 교육활동의 경우 학교 내 교육활동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안전사고 대응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예를 들어 I교육청에서는 의료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은 경우,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병원 이송 시 동행 교사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학교 밖 교육활동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별 절차를 해설서 형태로 제시한다면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음.

현장 체험학습 사고가 있을 때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이 있어요.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갔을 때 학생이 아플 때 약을 줄 수가 없어요. 약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보건교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보건교사가 다 현장체험학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학교엔 보건교사 하나 밖에 없잖아요...(중략)...고등학생 같은 경우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많이 가요. 그랬을 때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는 저는 선생님 꼭 동행해서 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경상일 때에는, 조금 덜 아플 때에는 이제 보조교사로 간 선생님이 같이 가주시고 좀 심각한 상황일 때는 담임 선생님이 같이 가주세요 라고 안내합니다. 그렇게 안내하는 이유는 부모님하고 계속해서 밀접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단순한 절차적인 지식에 플러스에서 자세한 사례가 있다면 굉장히 이 지침은 선생님들 교육 활동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교육청 E장학사)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E장학사는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CCTV설치와 같은 단순한 사후조치가 아니라, 학교 내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정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음. 이어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학교와 사회가 함께 안전을 책임지는 문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교사로서 안전교육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후약방문처럼 CCTV 몇 개 설치했나 검사하고 이렇게 아니라 CCTV가 잘 운영되기 위해 어떤 인적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확보해서 가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중략)...학교만 안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안전에 대해 함께 신경써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너무 학교에다가 책임을 묻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인식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후략). (I교육청 E장학사)

-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음.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의 시행 과정에서 교사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활동은 교육과정에 필수적으로 필요해 운영되기보다는 학부모나 학생의 수요조사 결과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시행됨. 그런데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인솔 교사가 전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합리함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이게 교육활동의 일환인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관련한 의사결정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현장 체험학습이 교육과정에 의해 필요하다, 이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수요조사를 하고요...(중략)...그리고 학생을 인솔하다가 사고가 나면 이 결정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 학부모, 운영위, 학교장의 책임은 없고 인솔했던 선생님들이 오롯이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현장체험학습이) 정말 교육적인 활동인가도 의문이고 만약 이게 교육적인 활동이라면 교사들의 의사결정 사항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는것인가? 그래서 학교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C교원단체 D교사)

-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보조인력의 채용·관리 및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학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지자체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달청의 카탈로그 계약 방식과 유사한 운영 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지자체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안전요원 채용·운영까지 포함한 통합형 상품을 개발·제공하고, 학교는 이를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조달청에 보니 카탈로그 계약이 있더라구요. 이게 지금 임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모든 것들을 포함한 패키지성의, 예를들어 홈쇼핑 여행 상품이요.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I관광공사에 전화를 해서 의견을 드렸어요. I관광공사에서 어떤 체험 장소나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할 때는 무조건 안전요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해주셔야지 할 것 같다.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학교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I교육청 E장학사).

현장체험학습이 이제는 외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나 지자체에서 책임지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안전을 보장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해 공청회를 가면 항상 관련된 수련원이나 센터 이런 곳에서 지금 교사 위기라고, 그리고 속초 체험학습 판결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 너무 힘들다고, 본인들이 안전인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책임질테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나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일일이 서류를 받고 하는 것이나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 덜 걱정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버

스부터 시작해서 안전요원, 보조인력도 충분히 배치를 하겠다...(중략)...현재는 지자체나 사설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다보니까, 여전히 사고가 나면 교사가 책임을 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한 규정이 있어야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C교원단체 D교사)

다. 유·초등학교 교사 그룹

1) 면담 대상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들은 총 4명으로, 유치원 교사 1명, 초등학교 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F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유치원 교사 경력이 총 20년으로, 현재 G시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음. G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로 현재 1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안전교육 및 인성·안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음. H교사는 P지역의 초등학교 교사로 23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인접한 Y도시에 파견 근무 중이고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교육부, 학교안전중앙공제회 등과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 경력이 있음. I교사는 초등학교 교직 경력이 21년이고 교무 안전부장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학 박사로서 현재 C대학 등에서 강의를 겸임하고 있음.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면담에 참여한 유·초등교사들은 대체로 지침의 입법 예고 및 개정, 고시 과정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침이 고시된 시기(7월 초)는 1학기의 마무리 단계로, 현장의 교사들이 평가 및 행정 업무가 가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던 점이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본 지침에 대해 교사들은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기 마련된 규정(조례), 관련 매뉴얼 등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음.

학교 안전관리 지침이 2025년 7월 4일에 고시가 되었는데, 사실 학교에서 7월 초는 1학기 말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는 물론 입법 예고 과정도 있었겠지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고시가 되었는지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시도교육청별로 체험학습,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시도별로 규정이나 매뉴얼 등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전에 있었던 것과 크게 차별성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후략). (초등학교 I교사)

- 또한 지침에 대해 전반적으로 너무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어 모호하며 구체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사건 유형별 대응 절차의 주체가 ‘교직원’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 대응 조직이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건교사 등 특정 교사에게 관련 업무가 편중될 것을 우려하였음. 또한 본 지침의 대응 절차는 학교 현장의 교사라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낮으며 학교 안전사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침이 구체화되거나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음.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보고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학교에서 앞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겠다.’ 보다는 ‘일거리가 늘었구나. 그리고 학교에서의 업무 갈등이 또 생기겠구나.’ 였습니다. 지침을 보면 계속해서 ‘교직원은~’이라고 되어있고 해당 업무는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먼저 안전 담당 선생님께 이 업무가 갈 것이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 담당 선생님이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초동 대처를 위해 뛰어나갈 수 없을 경우 이 업무는 보건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사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곤란한 것이 아니거든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설유치원 F교사)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응급환자)를 구분하는 주체가 교직원으로 해석되는데 해당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그 중 하나가 안전사고 발생 시 병원 이송 여부에 대한 교직원의 판단과 학부모의 인식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교직원은 가벼운 찰과상으로 판단하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처치를 학생에게 시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학부모는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보았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상처가 났을지라도 병원 치료를 원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꼭 가시기를 원하세요. 특히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성형외과를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부모님의 의견을 따르는 편입니다. 교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부모들마다 체감하는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후략). (병설유치원 F교사)

작년에 여학생 한명이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응급처치하고 약 바르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보고했더니 교감 선생님이 흥분하시며 그 아이를 다시 불러서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령과 응급처치에 관련한 우리 학교의 계획을 보여드리면서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중략)...병원 치료가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보건선생님이 아니라 관리자가 판단했을 경우 학교장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H교사)

- 관련해서 지침에서 대응해야 하는 학교 안전사고 유형의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과 같은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경우 가벼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은 학생들이 하루에도 다수 발생함. 그런데 지침에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침에 포함시킬 경우 번거롭고 효율적이지 못하며, 지침의 고시 목적과는 다른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대응 절차가 필요한 유형의 범위를 축소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유치원 아이들은 멍들고, 밴드 붙여주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가벼운 것까지 지침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너무 번거롭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대응 지침에 적용되는 안전사고의 범위를 축소하는게 필요하지 않나. (병설유치원 F교사)

학교 안전관리 지침이 고시된 이유가 사회적으로 볼 때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와 관련한 이유인 것 같은데, 만약 가능하다면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상해사고는 지침에서 제외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 유형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중략)...핵심은 중증환자와 사망사고인데, 지금 결국 지침에서 병원으로 이송은 어떻다, 경증은 어떻다 라는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교직원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지침이라면 중증 질병이나 사망 사고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침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I교사)

- 안전사고 유형의 범위를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학교장 및 교직원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 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의 내용에 주목하여 해석하는 의견도 있었음.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G교사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를 현행과 같이 지침에 포함하되, 다만 병원 치료 여부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일반상해사고로 하나로 통합하고, 생명위급상황은 좀 더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상해사고도 면책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반면 H교사는 지침에 일반상해사고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분쟁 등에 휘말릴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저는 오히려 일반상해사고를 하나로 합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중략)...일반상해사고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 교사가 보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대신 I선생님의 말씀처럼 사실 중요한 것은 중증이나 위급한 상황의 경우인데, 이를 좀더 세분화한 지침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G교사)

지침에 응급사고 부분만 있으면 되지, 일반상해사고가 지침에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일반상해사고는 다 대응하고 있거든요.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 두 가지를 지침에 포함시켰을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 저는 나중에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중략)...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교사가 판단해야 하는데, 의료인인 보건선생님을 거치지 않고 담임 선생님이 그냥 흉터라고 판단하고 후시딘을 발라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봤을 때 이건 분명 병원에 가서 꿰매야 하거든요. 이것도 병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작년의 경우에도 한 병원은 꿰매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병원

은 께매야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저는 더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
봅니다. (초등학교 H교사)

- 이처럼 안전사고 유형의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면담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가 현재 지침의 안전사고 유형 구분이나 구분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현 지침은 각 유형별로 대응절차의 기본원칙이 상황과악·전파→안전조치→상황정리→보고조치(사고통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음. 이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대다수의 교사들은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일부 유형의 경우 특정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특히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대응 절차 중 보고조치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보고조치에서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큰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 보건실에 30~40명이 다녀가요. 그런데 그중에는 가벼운 찰과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까지 학교장에게 일일이 보고한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교실에도 후시딘과 소독제를 구비하고 있어요. 이것까지 다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돼요. (초등학교 H교사)

-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보고조치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생명이 위급하지 않은 다소 경증의 사고의 경우에도 발생할 때마다 상위기관인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과도 행정이라고 보고 있었고, 교직원의 판단이 아닌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도 보고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

학교는 솔직히 독립된 기관이거든요. 근데 학교가 계속 지원청과 교육청에 보고한다, 이게 과연 면책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적으로 몇 건의 안전사고가 났는지 통계를 내기 위해 통계를 취합하는 것과 사고 하나하나를 보고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학교가 독립된 단위 기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개입하려

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H교사)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경증도 많고 보호자의 희망에 의한 병원 진료도 많거든요. 보호자의 희망에 의해 병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고를 해야되나요?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생명 위급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한다, 이것은 학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도 굉장히 과도한 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후략). (초등학교 I교사)

- 대응 절차에 관한 논의 중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 중 하나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부분임. ‘교직원은 (중략)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 라는 문구는 문법적으로 호응이 잘 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하는 주체가 교직원 인지 학부모인지 명확하지 않아 오역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음. 또한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후략)’ 의 경우 학생의 기저질환과 관련하여 병원 치료에 문제가 생겼거나 기타 의료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사가 갖는 부담감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음.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것이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호자에게 “제가 병원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교사가 데려간다는 것인가요?... (중략)...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 교직원이 동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교사가 이 아이의 친권자가 아니잖아요. 친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갔을 때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되거든요...(중략)...아이의 기저 질환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병원에 가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중략)...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에요. 교사가 동행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병설유치원 F교사)

- 생명위급사고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119구조대와 함께 교사가 동행하는 것과, 일반상해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 교사가 병원에 동행하는 경우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즉, 응급이 아닌 일반상해사고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가 동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로 학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학부모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게 하

고 있음. 교사는 법적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응급상황에서 병원 처치가 필요한 상태라면 후송은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하고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연락이 안 되면 안 데려가요. F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데려갔다고 해서 접수나 치료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연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라고 했는데, 응급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아이를 보호자없이 병원에 데려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H교사)

- 또한 교직원이 병원 이송에 동행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H교사는 다른 관점에서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 바로 피해자가 아닌 다른 학생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에게 의해 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교육활동 중 병원 이송이 필요한 사고가 발생하여 담임 교사나 보건교사가 가 피해 학생을 직접 이송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음.

교육부가 예전에 만들었던 응급의료체계 매뉴얼을 보면 보건교사 아니면 담임교사가 병원에 후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고를 당해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지만, 나머지 아이들도 수업활동 중이란 말이에요...(중략)...예를 들어 보건선생님이 후송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 사고에 대해 누가 대응을 합니까? 학교 응급체계 구조를 보시면 응급처치 담당은 모두 보건교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건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가버렸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거든요. (초등학교 H교사)

- 그 외에 대부분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황 파악 및 전파와 안전조치가 같이 실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황파악·전파와 안전조치의 경우 별도의 절차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절차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대부분의 상황에는 응급상황 파악 및 전파와 안전조치가 같이 실행이 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학교가 만약 규모가 큰 경우나 방과후에 주변에 선생님이나 학생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상황 전파보다 응급 안전조치부터 먼저 실행이 되면서 이후 119 신고가 이루어지고 교직원에게 전파하기에는 처음부터 힘든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중략)...저는 1항과 2항, 즉 상황파악·전파와 안전조치를 같이 묶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G교사)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있어 예산 및 관련 인력의 지원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특히 학생 안전을 위해 외부인 출입 통제, 등·학교 지도 등 학생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지킴이의 근무 시간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학교지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주로 하루에 3시간~3시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신데, 시간도 너무 단시간 근무이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학교 안전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지킴이의 자격도 강화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학교를 지킬 수 있는, 여기 지침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지킴이는 학교에서 채용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채용을 하면 더욱 좋겠죠. (유치원 F교사)

-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학교를 개방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등 학교가 개방되어 다양한 외부인들이 출입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관련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시 학교의 책임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직원이 본연의 생활 지도와 학습 지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지자체에서는 학교를 개방하는 조례를 만들어 놔어요. 운동장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야 되고, 지금 신설하는 학교는 복합시설, 즉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만들고 있어요...(중략)... 또 물론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방문 사전 신청제도도 도입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지나치게 열려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방을 메고 집에 나서는 순간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학교의 책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학교의 개방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교권 보호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 상충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가 생활지도와 학습 지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를 보호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내부뿐 아니라 외부, 그러니까 지자체와 경찰 등등 유관기관이 하나의 공

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I교사)

○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풍토 및 인식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우리 사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시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 소재를 묻는, 즉 허용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풍토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관련하여 H교사는 아이들의 작은 사고에도 과도하게 대응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를 비판하였음. 아이들은 놀면서 다치거나 다투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위험을 인식하게 되는데, 현재 사회는 아이들을 과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임. 이러한 과도한 보호는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유럽의 놀이터는요, 나무 결이 다 있어서 아이들이 베일 수 있고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져요. 그런데 그 놀이터를 설계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놀이터를 만든 거다, 다치라고. 근데 대한민국은 작은 멍이 들어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죠...(중략)...아이들은 놀다 보면 다칠 수 있고 다룰 수도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중략)...우리는 교육하는 사람들이고, 아이들에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경험을 통해 알게 해주는 사람이지, 사고가 벌어지면 "선생님이 달려가서 조치해 줄게. 소독도 해줄게. 병원도 데려가 줄게."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과연 이런 사회에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H교사)

○ 학교지킴이 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학교 개방과 관련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아이들을 과보호하고 잘못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풍토 개선 등 교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선 방안의 기저에는 학교라는 공간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가 아이들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라. 특수학교 교사 그룹

1) 면담 대상에 대한 배경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들은 총 4명으로, 특수학교 교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J교사는 특수학교 교직 경력이 5년으로,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안전생활부장을 담당하고 있음. K교사는 특수학교 교직 경력이 9년으로, 현재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특수학교의 안전생활부장으로 재직 중임. L교사는 13년째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로, 지체장애 보다는 자폐, 뇌전증 등으로 인한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에서 담임 및 생활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M교사는 20년차 특수학교 교사로,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생활안전부장을 맡고 있음.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본 면담에 참여한 특수교사들 역시 대체로 「학교안전관리지침」의 제정 사실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학교에서 안전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이상 해당 지침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음. 또한 지침 고시와 관련하여 사회적 쟁점이 되었던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면책 요건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다른 면담 집단과 달리 이 부분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K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특수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면책에 대해 크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저희는 항상 안전에 대해서 수업 반, 안전 반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이들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어디서 다쳤는지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이) 민감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특수 선생님들은 아침에 (다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하고...(중략)...일반 학교라고 민원이 더 많고 특수학교라고 해서 민원이 없어서 면책

에 대해 얘기를 안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이미 저희는 조금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학교 K교사)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해당 지침이 갖는 포괄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 생명위급사고의 큰 틀로 구분하는 것은 일선 학교에서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유형 구분에 있어 구체적인 예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모호하다는 지적이 동일하게 반복되었음.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기저질환이나 돌발행동,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 등으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유형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사실 이 판단을 교사가 내리는 것 자체가 모호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다쳤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교사별로) 누구는 병원을 가야 한다, 누구는 병원을 안가도 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중략)... 그래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를 좀더 명확한 기준이나, 해설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특수학교 K교사)

상해가 아닌 뇌전증으로 인한 대발작이나 당뇨로 인한 인슐린 쇼크는 지침의 대응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인가요?... (중략)...저희 학교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고가 있어서 궁금합니다. (특수학교 J교사)

- 또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학교의 판단에 학부모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었음.

뇌전증 환자가 대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에게 연락하기 전에 저희가 119에 신고를 하고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보호자가 그냥 좀 눕혀두면 괜찮은데 왜 굳이 119에 신고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병원에) 가게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수학교 K교사)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대응 절차의 전반에 걸쳐 특수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지침에 보건교사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음. 학교 현장에서 학생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등 의학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체는 보건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침에서는 그 역할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이에 따라 특수교사들은 의료 전문인으로서의 보건교사가 사고 판단과 대응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침에 명시해야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고, 일반 교사 또한 의료적 판단이나 응급처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일례로 저희 학교에서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처치를 했어요. 처치를 하고 부모님께 알렸는데, 부모님께서 왜 원칙대로 보건교사에게 가지 않았고 보건교사가 처치하지 않았고, 그것을 또 학부모에게 보건교사가 알리지 않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되게 분노하신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희는 작은 일이라도 꼭 보건교사가 와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처치라도 하고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해 보건교사의 말을 학부모에게 전달해 주는 쪽으로 하면 부모님들께서도 좀 더 신뢰하시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수학교 M교사)

- 특히 장애학생의 경우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보호자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특수학교 현장에서는 사고 대응과 관련한 대부분의 절차를 보건교사에게 일임하고 있다고 하였음. 이는 안전조치 단계뿐 아니라 상황정리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학생에게 의학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과정 또한 의료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

세 번째 상황정리 단계에서는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 자체가 의료적 지식이 없는 저희(교사)가 무언가를 안내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코피가 났을 때 보통은 코를 내리고 있으라고 하잖아요. 코가 뒤로 넘어가면 안되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민간요법의 일종으로 고개를 들고 있으라고 안내를 했던 말이죠. 근데 이렇게 제대로 된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특수학교 K교사)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황파악·전파 단계에서 최초발견자는 보건교사에게 연락을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를지, 병원에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보건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거나 구급차를 타거나 모든 경우에도 보건교사가 동행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후략). (특수학교 M교사)

- 다음으로 지침에 장애학생의 특수한 상황과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특히 안전조치 절차 중 병원 이송 과정에서의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거나 낯선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껴 돌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병원으로 이송될 때에는 학생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학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 또는 지원인력이 동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사표현이 안될 뿐만 아니라 낯선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구급차에 구급대원 같은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병원 이송할 때 교직원이 동행한다는 조항을, '학생을 잘 아는 친밀한 교직원이 동행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학생의 특징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교사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수학교 J교사)

- 현행 지침에서는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K교사는 이 조항을 특수학교 학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예를 들어 비장애학생의 경우 단순 처치가 가능하더라도, 장애학생의 경우 수면마취 등 특수한 의료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일반적인 진료 과정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애학생의 병원 이송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함을 명시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보호자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고 이송한다' 이런 문구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만약 다섯바늘 정도 꿰매야 하는 상황이 생겨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냥 부분 마취로는 꿰맬 수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수면 마취를 해서 꿰매거나 해야 합니다.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경우 보호자가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수학교 K교사)

-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상황정리 단계에서는 학생의 상황에 대한 인지나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 안내 대상을 보호자까지 확장할 것을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보았음.

1항 3호 상황정리에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는 부분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특수학교 상황에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학교를 아우르는 지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환자에게 주의사항 안내하고 보호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날의 작은 상처도 다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엄마 나 여기 (왜) 다쳤어."라고 설명을 해주기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이라서 저희는 반드시 보호자분들께 안내를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 L교사)

- 그 외에도 대응 절차 중 학교장 보고 단계의 시점과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교사들은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절차가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사건 대응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았음. 아울러 다른 면담 집단과 마찬가지로 경미한 찰과상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을 일일이 학교장에게 보고하기보다는 보건기록일지로 대체하거나, 지침 문구에 “필요 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등의 조건부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3) 기타

- 지침의 제1조(목적)의 대상을 밝힘으로써 지침의 제정 목적을 명료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음. 해당 조항에서는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부사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교직원 및 기타 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지가 모호하다고 보았음.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M교사는 장애학생들이 병원 진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일부 학생은 낯선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껴 돌발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에서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음. 또한 의료기관에서 장애학생의 진료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에 시도교육청과 지역사회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협약을 통해 협력병원을 지정하는 등 장애학생이 응급 상황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나아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음.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이제 사고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이가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진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중략)...의료 체계 쪽에서도 우리 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수학교 M교사)

협력병원을 지정을 해서 갈 수 있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병원을 가면 항상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OO시 교육청 협력병원으로 지정해서요. 구마다 하나씩 정해두면 이제 그 병원에 응급으로 항상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학교 K교사)

마. 학교 관리자 그룹

1) 면담 대상에 대한 배경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는 총 2명으로, 초등학교 교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N교장은 Y지역의 초등학교에서 3년째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총 교장 경력 기간은 5년임. O교장은 S지역의 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5년째 근무중이며, 총 교장 경력 기간은 9년이고 S지역 초등교장회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이력이 있음.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면담에 참여한 학교장 모두 2022년 11월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과 그에 따른 인솔 교사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이를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학교장 및 교직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 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과 연계하여 현행 지침을 평가하였음. 전반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며, 지침이 마련되고 이를 준수했을 시 면책 요건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효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교사들의 인식이라는 것임.

아마 이 법(학교안전법)이 강원도 속초에서 일어난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문에 개정된 것 같은데요, 제가 2022년 사고 당일 수습을 위해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1심이 끝나고 9월에 2심 재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원도 뿐 아니라 전국 모든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이 거의 멈춰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안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게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아직 저희 학교도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N교장)

- 또한 교사들은 “지침이 아니라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세부 매뉴얼의 부재를 지적하기 보다는, 어떠한 매뉴얼이 주어지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가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회의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현장에서는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침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내려달라” 이렇게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내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지역 자료를 찾아봤더니 OO시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안내하는 매뉴얼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한 안내, 또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안내가 이미 있어요. 사실 이 지침 말고 매뉴얼로도 기존에 어느 정도 안내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매뉴얼을 달라는 얘기는 매뉴얼이 없으니까 만들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매뉴얼을 주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사실 매뉴얼을 주고 지침을 주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현장체험학습이 재개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고민을 현장 책임자로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O교장)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가 너무 길고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일반상해사고’를 ‘사고’로 줄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 ‘생명위급사고’ 등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는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를 ‘경미한 사고’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의미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았음. 다만 ‘일반상해사고’라는 용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 외래의 사고뿐 아니라 학교폭력, 자해 등 의도가 포함된 사고까지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대응 절차의 안전조치 중 교직원이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었음. 먼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치료(처치)하는 주체가 담임 교사인지, 보건교사

인지 지침에 명료하지 않으며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에 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보고 있음. 관련하여 N교장은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비의료인인 교사가 응급처치를 잘못 시행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를 들어 지적하고 있음.

2023년 대전지방법원 판결이 하나 있어요. 보건교사가 보건 수업을 하러 보건실을 비운 상황에서 다른 교직원이 보건실을 지키고 있었죠. 근데 거기서 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걸 보건교사가 아닌 일반교사가 잘못 판단해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지침을 보면 '최초 발견자는 상황을 전달한다,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의학적 상식이 없는 교직원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판단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의학적 지식이 있는 보건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교직원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다. (초등학교 N교장)

- 학교장 역시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 사고 유형의 경우 보고조치(사고통지)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가벼운 찰과상과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와 같은 경미한 사고까지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음.

학교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교사가 학교장에게까지 보고해야 된다고 하면 담당하는 보건교사나 담임교사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요. 미세한 사고까지 보고해야 될까요? 그냥 상황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N교장)

- O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보건실에 다녀가면 보건교사가 보건일지에 기록을 해두고 있으나, 해당 기록을 학교장에게 별도로 보고하거나 결재 절차를 거치지는 않고 있음.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안전공제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상으로 보고를 받고 있음. 따라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보다는 '보건일지에 기록한다.' 내지는 '보건교사에게 통보하여 보건 일지에 기록한다.' 정도로 구분하여 서술할 것을 제안하였음.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연 6,000건의 처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6,000건을 일일이 어떻게 보고를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보건 교사가 자기 기록지나 보건일지에는 기록을 합니다...(중략)...병원 치료가 필요한 사고와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를 분리를 해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학교장에게 보고한다고 하지 않고 보건 일지에 기록한다, 내지는 보건교사에게 통보해서 보건 일지에 기록한다. 정도로 구분을 해 놓는건 어떨까요? (초등학교 O교장)

(3) 기타

- ‘지침’은 큰 틀 안에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현행 지침의 일반성, 포괄성에서 오는 한계는 불가피하다고 보았음. 다만 안전사고의 유형이나 상황에 따라 대응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세부 매뉴얼로 구체화시키고, 세부 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지침 제4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학교 내 교육활동과 학교 밖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교내와 교외를 전부 아우르다 보니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차피 지침이니까 교내외를 다 아울러야 되는 거잖아요. 디테일한 부분은 매뉴얼에 넣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중략)...그래서 기타(제4조) 등의 조항에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은 교내와 교외를 구분해서 매뉴얼을 제공한다 라는 내용을 넣어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학교 밖이나 학교 안이냐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다른 것 같거든요. 학교 밖에 보건교사가 없을 때는 현장에 있는 교직원이 대응을 해야 하거든요...(후략). (초등학교 O교장)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학교의 관리자로서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학교 지원인력(외부인력 포함)의 상해사고 및 산업재해를 포함한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현재의 상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대전 하늘이 사건 아시죠?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학교장이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교육부에서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학교장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러면 정말 부담이 너무 큼니다. 또 하나는 저희 학교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오셔서 청소 보조라던가 이런 일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두 분이 쓰러져서 119를 부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학교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중략)...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또 교직원 말고도 외부 인력의 사고 발생시 학교장이 져야 하는 책임, 특히 대전 하늘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교장의 관리 한계를 넘어서, 개인의 일탈에 의한 사건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묻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고민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N교장)

- 또한 학교 현장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현장체험학습이 다시 재개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적 분쟁 등과 관련한 교사의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음. P교장은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본인의 직무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는 소송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당연퇴직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방향 등을 제안하였음.

현장체험학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답사를 하고 해야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일형 현장 체험은 꼭 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저희 학교의 현장체험은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중략)...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형사처벌을 받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당연퇴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두렵다는 거죠. 어떤 매뉴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 큰 틀에서 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개인의 비리로 인해 사고가 나지 않았고 직무에 최선을 다했다면 직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을 좀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O교장)

바. 중학교 교사 그룹

1) 면담 대상에 대한 배경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중학교 교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P교사는 D시의 중학교 체육 교사로 교직 경력은 19년이며, 세월호 사건 이후 2015년부터 학교안전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 7대 안전교육 자료 개발 등에 참여하였음. Q교사는 G 지역의 교사로 16년째 재직 중이며, 학교중앙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과 관련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등에 참여한 경력이 있음. R교사는 15년의 교직 경력을 가진 중학교 교사로 현재 생활안전부 소속으로 학교폭력과 학교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S교사는 중학교 영어 교사로 교직 경력은 18년이며 교육부, 학교중앙안전공제회 등과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서 인성안전 부장을 맡고 있음.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학교 현장에서 본 지침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정도는 학교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침의 고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반대로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소속 학교의 구성원과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음. R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두고 교내에서 논란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R교사는 학교안전법 및 지침의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교사들은 지침의 내용이 모호하며 부득이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교사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더라도 지침이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냈음. 이러한 인식 속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재개되었으나 교사들은 여전히 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느꼈으며, 이에 R교사는 지침 제4조를

근거로 교사용 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였음. 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시행 전 사전 회의를 통해 안전관리 절차를 공유하고 안전기구를 점검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지침에 대해 100% 인지하고 계십니다. 6월 말부터 체험 학습활동 관련해서 체험학습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가 관련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 학교안전법 10조 3항, 5항 관련으로 선생님들께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은 안전조치를 했을 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지 못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 와중에 7월 4일에 지침이 나오게 돼서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께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용어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라는 믿음을 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중략)...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지침 4조에 착안해서 나름대로 교사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연수 자료도 만들어서 어제 교직원 회의 때 연수도 했어요. 학교에서 연수를 하고, 인솔 교사가 사전에 회의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면 나중에 교직원의 의무를 다했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로 일단 여러 가지 일들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R교사)

- 반면 S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는 지방의 중소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란 없이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실시하는 분위기였음. S교사는 소속한 지역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적어 교사들이 체험학습 및 안전사고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관련해서 본 지침에 대해서는 안전부장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조차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언급하였음. 지침에 대해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침 제4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지침의 세부적 실행 방안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다른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느낀 점은 저희 지역이 완전 지방이라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느슨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경각심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현장체험학습 가는데도 그렇게까지 고민하고 선생님들 사이에서 논란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크게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인성안전부장인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개정되었던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가 안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늦게 인지가 되었다는 말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관련한 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중략)...지침이 좀 되게 많이 간단한데,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도나 학교장에서 별도로 지시하는 것을 따르게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지침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각 시도별로 부족한 부분을 상황별로 채워 넣으라는 의도로 두루뭉술하게 제시한다고 생각하고요. 각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구체적 상황별 시나리오를 포함하거나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등 이런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런 구체적 상황 제시는 아마 각 시도별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중학교 S교사)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현행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의 구분 기준은 다소 모호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유형을 학교 현장에서 교직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고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음. R교사와 Q교사는 실제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를 제시하며 교사의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이는 초등학교 교사 FGI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상태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판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교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지난주에 저희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하다가 학생이 공에 맞아서 얼굴이 약간 긁히는 사고가 있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간단한 처치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부모님은 학생이 이렇게 다쳤는데 왜 병원에 보내지 않았냐, 이런 의견 차이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후략). (중학교 R교사)

저는 수도권 G중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생기는 사건이나 사안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지침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로 구분해 놓았는데 이것을 교사가 구분하기에는 솔직히 좀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안보냈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교사가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병원을 보냈을 때에는 왜 병원에 보냈냐고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해 놓고 절차에 따른다 라는 부분은 의료 지식이 없는 교사가 처리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학교 Q교사)

- 특히 피해 학생의 상태가 어느 정도일 때 ‘생명위급환자’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학부모와 학생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석상의 불명확성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음. 이와 관련해서 P교사는 추후 관리자 및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수와 홍보를 강화하여, 지침의 취지와 세부 내용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응급 환자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기준점을 두고 판단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충이고, 그랬을 때 나중에 학부모하고 학생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학교는 굉장히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 (지침을)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일반적 절차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세분화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 학교 현장의 각종 홍보라든지 담당자 연수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인식할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실제 만들어져 있는 제도에 맞게 진행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P교사)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타 학교급 교사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보고조치에 대해 중학교 교사들은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다소 번거롭더라도, 이러한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 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저는 안전 분야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다 보니 학교장의 보고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 선생님의 책임 소재가 달라져요. 보고를 하게 되면 전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학교장이 짊어지고 가게 되는데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그 선생님이 나중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중략)...선생님들이 절차에 대한 부분이 좀 까다로운 것 아니냐, 내가 굳이 교장한테까지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사고를 경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

점을 경험한 저로서는 책임에 대한 소지가 선생님에게 있는 것보다는 학교장이 책임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중학교 P교사)

P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공문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공문에 따라 책임 소재라든지 그런 것이 판단이 되니까요. 지금 보면 지침에 학교장에게 보고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장이 모르는 일이 있으면 안되거든요. (중학교 Q교사)

- 대응절차 중 병원 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대응절차에 대해서는 면담에 참여한 중학교 교사들이 대체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음. 먼저 이 유형의 경우 안전조치 단계에서 교직원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응급처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교사가 응급처치를 수행할 경우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며 대부분 보건교사에게 해당 업무를 일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응급처치라는 부분이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교사 외에 일반적인 교사가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응급처치의 주체를 교직원이라고 표현했을 경우 당시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누구나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저희는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생긴다 하더라도 보건 선생님을 불러서 응급처치를 하지 일반교사가 응급처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P교사)

응급환자 같은 부분도 저희 학교에서는 직접적으로 조치는 전혀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119에 연락해서 이송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선생님 같은 경우도 사고가 발생하면 보건선생님이 전적으로 진행은 하되 보건선생님께서 최대한 학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사안이 경미하더라도 일단 병원에 갈 것을 추천하면서 학부모가 판단하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S교사)

- 응급처치 시행 후 “보호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직원이 동행하여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은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는 조항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교사들은 는 ‘이송할 수 있다’ 는 문구가 상황에 따라 이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표현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하였음. 그리고 해당 조항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와 10분 이상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현장 도착까지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등과 같이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의 판단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아울러 병원 이송 시 동행하는 교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행한 교직원이 피해 학생 보호와 관련한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장 보고까지 직접 담당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음. 이에 따라 동행 교직원이 학교안전담당관이나 교감 등 지정된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해당 담당자가 학교장에게 최종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를 지침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현재 지침은 동행한 교직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행한 교직원이 학교장에게 보고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락 체계가 마련되어서 동행한 교직원이 학교안전담당관이든지 교감 선생님에게 연락을 취해서 궁극적으로 그분이 학교장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동행한 교직원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유롭게 동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누가 동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S교사)

- 다음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상황정리’ 단계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현행 지침이 교사에게 과도한 판단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병원에 동행한 교직원은 의사 판단에 따라 피해자 스스로 귀가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 후 보고한다”는 조항 중 ‘의사 판단에 따라’라는 문구가 자칫 교직원의 판단 책임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고 이후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였음. 교사들은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교직원과 학부모 간 인식 및 판단의 차이는 ‘상황정리’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대응절차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석됨.
-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보고조치’와 관련해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교육

청까지 보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행 지침에는 교육청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교사들은 이를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음. 특히 병원치료 건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보고 업무가 교사에게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음. 관련해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고 범위와 절차를 구분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보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병원치료의 건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교사가 업무과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교육청 보고까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중학교 Q교사)

- 생명위급사고 대응절차 중 ‘상황파악·전파’ 및 ‘보고조치’ 단계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상황파악·전파’와 관련, 현행 지침에서는 최초 발견자가 119에 신고한 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다른 교직원이 근처에 없을 경우 발견자가 환자를 두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 상황을 알리러 가야 한다는 다소 비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이에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교사와 상황을 전파하는 인력을 명확히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동을 해라, 라는 것은 또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교사는 학생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학생들을 시켜서 외부에 안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침 조항 문구 자체를 보게 되면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 전파 라는건 선생님이 직접 가서 전파해야 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P교사)

- 생명위급사고의 ‘보고조치’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고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현행 보고 체계상 인명 피해나 심각한 시설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중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 지침에서는 생명위급사고의 보고 대상이 교육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기존 보고 체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고 대상 및 절차를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그 외 안전조치 단계의 문구 중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에서 환자 ‘를’을 삭제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 보호자에게 연락하여’로 변경함으로써 의미를 보다 명료화하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음.

(3) 보조인력

-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보조인력이 면책 요건에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 의무 조항과 역할 범위가 지침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보조인력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일용직 등 수당 기반 계약 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 시 보조인력이 학교 소속이 아닐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고 있음.

교육청에서 보조인력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서 학교현장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도 책임 소지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이제 기간제 교사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 그냥 사표 내고 나가버리면 나머지 부분은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 그 분이 책임을 끝까지 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중략)...보조인력에게도 어떤 면책 조항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수적으로 의무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면책 조건이 들어가야 되는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P교사)

- 보조인력의 역할과 관련하여 R교사는 지침 제4조를 근거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현장학습체험 매뉴얼에 보조인력의 역할과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를 토대로 R교사는 보조인력 관련 사항을 학교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매뉴얼 형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기타

-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내 외부인 침입, 흥기 난동, 유괴 시도 등 새로운 유

형의 위기 상황에 대해 현행 지침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음. 특히 흉기 난동과 같이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는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학교나 교직원이 단독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이러한 사안은 기존의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흉기 난동이나 테러와 같은 학교 보안사건과 관련된 부분에 지침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건을 잠재우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학교에는 여자 선생님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흉기 사건이나 범죄 사건에 쉽게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R교사)

지금까지 접했던 다양한 사고들은 교직원이 해야 하는 행동들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환자 발생 시 환자에 대한 대응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흉기난동사고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대응하냐는 부분은 굉장히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P교사)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학교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시도교육청에서는 보조인력 인건비 등과 관련된 예산을 단위학교로 교부하고 있으며, 학교는 교부된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로 인해 학교 구성원들이 원치 않더라도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또한 보조인력을 채용하고 이들을 관리·운영하는 업무 역시 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교사들은 학생 인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보조인력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행정적·운영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인솔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다 보니 보조인력 제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라는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인원에 비례해서 학교 기본 예산에 포함해서 보조인력 예산을

내려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보조인력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니까 학교는 또 집행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니 가기 싫은 것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중략)...어떤 제도가 생기면서 그 제도에서 파생되는 것들까지 고민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학교현장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P교사)

사. 고등학교 교사 그룹

1) 면담 대상에 대한 배경

- 해당 회기의 면담에 참여한 면담 대상자는 총 3명으로, 고등학교 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T교사는 교직 경력이 20년인 체육 교사로, 현재 여자고등학교에서 재직하며 체육부 및 현장체험학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학교안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음. U교사는 현재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 중인 교사로, 교직 경력은 총 19년임. V교사는 10년차 국어 교사로, 현재 남자고등학교에서 4년째 재직 중임.

2) 면담 주요 내용

가) 지침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평가

- 현행 지침은 교사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던 일반적인 대응 절차를 법적 문서로 체계화한 수준으로 특별히 새롭거나 차별적인 내용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또한 고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등 저연령 학교급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적으며 사고 발생 시에도 주로 보건교사를 통해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대한 관심도와 인지도는 타 학교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해석되었음.

나) 지침 개선 방안

(1) 안전사고 유형

- 고등학교 교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안전사고 유형 구분의 모호함과 이에 따른 판단 주체로서 갖는 부담감이었음. 교사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고 이후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의 판단이 법적 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보였음. 이에 따라 지침에서는 사례 중심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하여 이러한 모호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물론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대충 이정도면 병원치료가 필요하다, 내지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법적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교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너무 모호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화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U교사)

-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보건교사가 의학적 전문성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으나 병원 치료 필요 여부를 보건교사조차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따라, 교사의 판단만으로 사고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라 대응 절차를 달리 하는 방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학교에서 제일 전문가인 보건 선생님도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치료를 하든 안하든 일단 판단을 보건선생님이 하시는게 아니라 학부모님과 통화를 해서 상의한 후 병원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정하는데, 이걸 저희 교사들이 판단했다가 나중에 지나고보니 심각한 병으로 발전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또 교사가 제대로 판단을 잘못해서 면책 요건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냐, 하지 않냐를 판단하는 것은 교사들이 해야 할 몫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T교사)

(2)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절차

- 교사들은 상황파악·전파 단계의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는

지침 문구가 실제 학교 현장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절차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음. 앞서 지적했듯 학교 현장에서 처치가 필요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 보건교사를 통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이 부분도 앞서 지적을 계속 해주셨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보건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가까운 교직원이라는 말은 글썽요, 그냥 옆에 있는 선생님을 말하는 건가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좀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U교사)

학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전문가는 보건교사이니까, 가까운 교직원에게 보다는 ‘최초 발견자는 보건 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그 뒤 ‘보건교사는 간단한 처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건 선생님도 간단한 처치를 하시는 것이지 본인의 영역 외에는 처치를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병원 이송 등)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부담감을 느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T교사)

- 안전조치 단계와 관련해서는 ‘간단한 응급처치’와 ‘적절한 응급처치’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지침에 따르면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를, 생명위급사고의 경우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 표현 간의 의미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음. 교사들은 만약 현행 지침에 사용되는 문구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여 두 단계의 처치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음.

병원치료가 필요한 사고에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고 생명위급사고에는 적절한 응급처치라고 할 때, 간단하고 적절한 것의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말로 구분하기 위해 굳이 만들어 놓은게 아닐까, 다 적절한 응급 조치가 되어야 하는거지, 간단한 응급처치라는 것이 저는 뭔지 조금 모르겠어서 용어를 구분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V교사)

- 또한 응급처치의 실제 수행 가능성과 관련해 V교사는 일반 교사들이 매년 1회씩 이수하는 심폐소생술(CPR) 연수가 주로 실습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본능적이고 반사적으로 대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음. 그러나 그 외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응급처치나 간단한 처치의 경우에는 실습 경험이 부족하여 교사들이 직접 시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음.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연수를 받거든요. 이 연수는 실습 위주의 연수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은 효과적으로 잘할지 못할지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실습을 받아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다양한 사례에서의 응급처치나 간단한 처치들은 훈련도 한 적도 없고 연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연수를 받는다고 해도 실습 위주의 연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U교사)

- 한편 현행 지침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주로 보고를 받거나 시·도교육청에 사고를 통지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자칫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음. 이에 대해 W교사는 학교 관리자로서의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와 역할이 지침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며, 학교장이나 교감이 사고 대응 과정에서 보다 주도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리자라면 그 책임에 맞게 필요한 조치라든지 연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 교사들은 수업을 하고 있거나 평가 활동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관리자들이 꼭 상황정리 후에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 중에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 드러나지 않는 느낌 이어서 (학교장의 역할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V교사)

- 이는 학교장뿐 아니라 보건교사와 일반교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체계와 역할을 지침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어졌음. 교사들은 이러한 조치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책임이 명확히 부여될 경우 오히려 각자의 역할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과 실천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역할이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부담이 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명확히 하는 것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상황파악 단계에서도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파한다’보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된다 라는 지침이 있다면 가까운 사람을 찾기보다는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할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교직원이라고 하면 어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된다는 건지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명확히 지워주면 그만큼 또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책임이 주어졌을 때 그냥 책임만 주는게 아니라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이나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되는것인데 이렇게 (지침에) 모호하게 제시되면 아무도 책임 지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후략). (고등학교 U교사)

(3) 기타

- 지침 제4조(기타)에서는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학교 내 안전 기구(가칭)에서 결정한 안전대책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예를 들어,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하기 전 사전안전역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과 관련된 예방 조치 및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기구는 학교 관리자, 교사,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이므로 이를 지침에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판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음.

현장체험 가기 전에 사전안전역량 평가단 회의를 열어서 안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이 협의록을 남겨놓잖아요. 교사 한 명이 정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전 대책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의견으로 수렴된 내용이라서,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면은 안전에 대한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안전역량 평가단 회의를 열어서 거기에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이 지침에 학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 내의 사전안전역량 평가단에서 결정한 안전 대책에 따라 이렇게 한다면 사전안전역량 평가단에서 나온 회의 결과들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T교사)

다) 학교 안전사고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

- 앞서 본 면담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보건교사 주도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침에 보건교사의 역할이 명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이는 보건교사나 관련 보조인력 충원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실제로 학교에서 조금만 아파도 보건실에 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보건선생님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건 선생님 혼자 계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쉽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어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안전사고를 담당하는 보조인력을 뒤편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등학교 U교사)

3. 종합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실시한 FGI 결과를 종합하여 <표 IV-2>에 제시하였음.
- FGI 결과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현행 지침의 방식에 대해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비의료인인 일반 교사로서는 어떤 경우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또 어떤 상황을 생명위급상황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형별 구체적 예시를 포함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연수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교사들은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자신이 내린 판단이 학부모의 불만 제기나 민원,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었음. 실제 면담에 참여한 교사들은 관련 사례를 다수 공유하였으며, 문제의 본질은 교사가 지침이나 매뉴얼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더라도 그 판단에 대해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유형별로 획일적으로 제시된 대응절차(상황파악-안전조치-상황정리-보고조치)는 실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사고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일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음. 특히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사고의 경우 상황전파 및 보고조치 단계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또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보건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각 대응단계별 주체와 책임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공통된 개선 요구로 나타났음.
- 보조인력과 관련한 논의는 일부 집단에서 이루어졌는데,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보조인력이 면책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지침 내에 보조인력의 정의와 역할, 사고 발생 시 수행해야 할 구체적 임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음. 이는 보조인력이 학교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일정한 법적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 대응 과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현행 지침이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어 학교 안전사고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지침 개정 시 사고 예방 단계와 사후 복구 단계를 포함한 전과정형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또한 다수의 집단에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설서나 매뉴얼 형태의 보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한편, 일부 집단에서는 학교 안전사고의 최종책임자인 학교장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여, 사고대응 전 과정에서 학교장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기타 학교안전사고관리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핵심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FGI에 참여한 다수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음. 또한 학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음. 일부 집단에서는 안전사고관리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나, 동시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학교에 내려올 경우 교사가 집행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오히려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었음.

〈표 IV-2〉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FGI 주요 결과

구분	지침 개선 방안				학교 안전사고관리 개선방안
	유형 구분	유형별 대응절차	보조인력	기타	
교원단체· 시도 교육청1	·비의료인이 판단하기 쉽게 유형별 예시 등 제공 ·유형 재구조화 필요(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활용 등)	·교사의 역할·책임체계 명확화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표현 수정 필요		·지침의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학교 구성원 역할 분담 명확화 ·학교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원단체· 시도 교육청2	·유형 구분의 모호함 및 판단 주체로서의 부담감 해소 필요	·가벼운 일반상해사고 절차 간소화 필요(상황전파, 보고조치 등)	·법 개정에 따라 보조인력에 대한 자격, 의무, 책임과 관련한 사항 명시 ·보조인력 채용의 지자체 협력 및 보조인력 전문성 제고 필요	·사고 전·중·후의 대응 절차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 체계성 확보 ·상황별 절차 및 사례 중심의 해설서 제공 필요	·학교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의 학교 안전 협조 필요 ·현장체험학습의 의사결정에 교사 참여 필요 등
유·초등학교	·유형 구분의 모호함 및 판단 주체로서의 부담감 해소 필요 ·유형 범위 재조정	·가벼운 일반상해사고 절차 간소화(보고조치 등) ·교직원과 동행하여 병원에 이송하는 절차의 개선 필요 ·타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포함 필요		·지침의 구체화 필요(대응 주체 및 역할 등)	·관련 예산 및 인력 지원 ·지자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 필요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유형 구분의 어려움 개선 필요 ·유형 구분에 따른 부담감(교사의 판단과 학부모 판단의 불일치 등) 해소 방안 필요	·대응절차에 보건교사 역할 명시 ·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 개선 필요(안전조치, 상황정리 단계 등)		·지침 제1조(목적)의 명확화 필요	·특수학교 협력병원 지정 등
학교관리자	·용어의 가독성 제고 방안 필요	·대응절차별 주체 명확화 ·가벼운 일반상해사고 절차 간소화(보고조치 등)		·안전사고 유형 및 상황에 따른 세부 매뉴얼 개발 필요 ·사고 발생 장소(학교 내/학교 밖)에 따른 사고 구분 필요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관리자 부담 경감 방안 필요
중학교	·유형 구분에 따른 부담감(교사의 판단과 학부모 판단의 불일치 등) 해소 방안 필요	·응급처치의 주체 명확화(보건교사) ·‘병원 이송 교직원 동행’과 관련한 절차 개선 필요 ·사고의 경중에 따른 보고조치 구분 ·기존 보고 지침과 상충되는 부분 개선 필요	·보조인력의 의무 조항과 역할 범위가 지침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보조인력 제도 도입에 따른 운영상 부작용 해소 필요
고등학교	·유형 구분의 모호함 및 판단 주체로서의 부담감 해소 필요	·상황전파 문구 개선 필요 ·기타 모호한 문구의 개선 필요 ·지침에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부여		·지침에 학교장의 역할 확대 필요 ·지침 4조 개선(학부모가 포함된 안전기구 등에 따라)	

V.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

- 본 연구는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적절성과 현장에서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이를 위해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의 법적·제도적 배경을 살피고 관련한 현안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미국·일본·영국 등 국외 주요국의 학교 안전사고 관련 지침을 분석하였음. 아울러 각 학교급의 교사, 교원단체 관계자, 장학사, 학교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현행 지침과 관련한 쟁점을 밝히고 이에 관한 각 집단의 경험과 인식을 분석하였음.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사고 대응 절차 내 역할과 책임의 구체화

- FGI 결과 교원단체, 중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 등 여러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한 부분은 사고 대응 절차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음. 교사들은 안전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에서 행위 주체가 단순히 ‘교직원’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역할과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음. 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단계에서 누가 중심이 되어 움직여야 하는지 혼란이 생기고, 대응 과정도 교사 개인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사고 유형별 대응 절차를 담임교사 또는 인솔교사, 보건교사, 관리자, 교육지원청 등 주체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불필요한 혼선이 줄어들고,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음. 더불어 단순히 절차를 나열하는 방식을 넘어서 사고의 유형과 단계에 따라 각 주체의 역할과 의사결정 지점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흐름도나 역할 중심 매뉴얼을 마련하면 상황 파악이 수월해지고, 대응 과정도 단계별로 일관되게 유지되며, 책임 주체 간 협업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이러한 체계화는 학교 전

체의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음.

2) 사고 유형 판단 기준의 명확화 및 관련 교사 연수자료 제공

- FGI 결과, 모든 집단에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도록 한 현행 지침이 실제 판단 과정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음 사고가 병원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나 생명위급 상황인지 여부는 일정 수준의 의료적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사가 즉시 결정하기 어렵고, 잘못 판단할 경우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함께 제기되었음.
-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아닌 교사도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예시, 판단 기준표, 단계별 점검 목록, 연수 자료 등을 제공하여 판단 과정에서의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는 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구체적 자료는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교사가 사고 발생 직후에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임.

3) 상황전파 및 보고 절차의 현실화

- FGI 결과, 현행 지침에서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상황전파 절차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 교사들은 현장의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특히 사고의 경중이나 맥락에 따라 굳이 상황전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함에도 지침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가 발생한다고 보았음. 이를 고려해 교사들은 상황전파의 방식과 수준을 사고 유형에 맞게 조정하거나, 최소한 일부 단계는 학교급과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생략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예컨대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상해사고의 경우에는 상황전파 단계를 생략할 필요가 있음. 특히 초등학교 등 담임교사가 학급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굳이 ‘가까운 교직원에게 상황을 전달한다’는 상황 전파 절차는 실효성이 낮고, 현장의 실제 운영 방식과도 맞지 않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에게 상황을 전달한다.’, 또는 사고가 경미한 경우 상황전파 단계를 생략하도록 하는 방식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고(통지) 절차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현행 지침의 내용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특히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상해 사고의 경우, 모든 건을 학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현행 지침은 사고의 경중과 무관하게 행정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과잉 행정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았음.
-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상해사고의 경우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음. 실제로 교내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들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모든 사례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 모두에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더불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과 무관하게 학부모의 요청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선도 존재하고 있었음. 교사들은 이러한 사례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지침의 실효성도 낮아진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고(통지) 절차는 보다 현실적이고 구분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상해사고의 경우 경미한 경우는 굳이 학교장 보고를 요구하기보다 ‘필요 시 보고’ 한다거나 ‘보건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와 같은 조건부 조항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임. 이는 학교의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미 사고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하는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병원치료가 필요한 일반 상해사고의 경우,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을 별도로 명시하거나(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 등), 경미 사고는 보건기록 또는 학교장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식, 병원치료 여부만이 아니라 사고의 중대성 또는 재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고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개선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 이렇듯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 방안은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고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4) 지침의 구체성 강화 및 용어 정비

- 면담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현행 지침에서 사용된 ‘가까운 교직원’, ‘간단한 처치’, ‘적절한 처치’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 때문에 상황 판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 이러한 표현은 사고 상황에서 누구에게 전달해야 하는지, 교사가 어느 범위까지 조치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교사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침의 표현을 보다 구체화하여 지침을 누구나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명료화해야 한다는 개선 방향을 제안함. 예컨대 ‘가까운 교직원’이 실제로는 어느 범위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인 교사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까지 포함되는지 등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지침의 특성상 세부 내용을 모두 담기 어렵다면 해당 용어의 범위와 적용 기준을 설명하는 해설서, 예시, 안내서 등을 별도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이는 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고 사고 대응 과정의 혼선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또한 관련 조항인 제3조 제2항 ‘안전조치’ 중 ‘교직원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 후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문구 역시 이송의 주체가 교직원인지 학부모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를 보다 명료하게 수정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얻은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등과 같이 수정하여, 이송 결정 과정과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함. 이는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 주체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5) 학교급 및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의 포괄적 적용

- FGI 결과 유·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들은 현행 지침의 일부 내용이 학생의 연령, 인지 발달 수준, 언어 발달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경우 의사 표현이 제한적이거나 돌발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대응 과정에서 학생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함. 이러한 특성이 고려되

지 않은 지침은 실제 현장에서 교사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거나, 오히려 적절한 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침은 다양한 학교급과 학생 특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상황정리 단계에서 제시된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는 문구는 학생이 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발달 단계인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함. 이에 따라 이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한다’와 같이 수정하면 유·초등학교 학생이나 장애 학생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조정은 단순한 표현 변경이 아니라 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특수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지침의 실행 가능성과 적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6)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지침에 명시

- 최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 적용 범위를 현장학습 보조인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11월 1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음(뉴시스, 2025.11.13.). 이는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 조치로서,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면책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도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인력의 역할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FGI에서도 다수의 교사들은 보조인력이 면책 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침 내에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즉 면책 범위가 확장되는 만큼, 보조인력이 학교 안전사고 대응 체계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적 임무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지켜야 할 절차와 책임 수준 또한 명확히 안내해야 함. 이를 통해 보조인력이 안전사고 대응 체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학교 차원의 사고 대응 역시 보다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따라서 지침 개선 시 보조인력의 정의, 역할, 사고 시 수행해야 할 조치, 교직원과의 협력 방식 등을 별도의 항목으

로 명시하여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함.

7) 학교 안전사고 대응 조직을 편성하여 지침에 명시

- 일본의 경우 학교장이 책임자가 되어 학교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전 대응 체제를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미국 역시 대비 단계에서 교직원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위기관리팀(ICS)를 구성하며 계획뿐 아니라 시나리오 기반의 훈련을 강조하고 있음. 호주는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 비상관리계획팀 및 사건관리팀(Incident Management Team, IMT)을 구성하고 체계적 역할 분배를 강조하고 있음. 나라별로 구체적 역할 및 직위는 다르지만, 안전사고 대응 조직에는 주로 사건 총 책임자(지휘자), 연락 담당자(상황 전파자), 안전 담당자, 언론 담당자, 물적 지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음.
-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은 별도의 조직이나 역할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건 발생 시 교직원의 절차별(상황 파악 및 전파-안전조치-상황정리-보고 조치)대응 방법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향후 지침에 학교 안전사고 관리(대응) 조직 등을 사전에 별도로 편성하고 역할 중심 구조로 변경하여 이를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8) 피해 학생을 포함한 교내 모든 학생들의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 포함

- 현행 지침은 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에 대한 응급 처치, 병원 이송, 보고 조치 등 직접적인 대응 절차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 학생뿐 아니라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음. 예를 들어 일본은 사고 목격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즉각적 케어 절차와 사후 상담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사고가 학생 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고려가 반영되어 있음. FGI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현행 지침의 갖는 한계 중 하나로 지적되었음. 교사들은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학생 외에도 현장에 있던 여러 학생이 심리적 동요와 불안을 겪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절차가 부재해 현

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재난이나 사고와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뿐 아니라, 사고를 목격하거나 연관된 학생들의 안전 확보 등과 관련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이러한 보완은 학생 전반의 회복을 돕고, 사고 이후의 학교 정상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참고문헌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5). 2024년 학교안전사고 분석 통계.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5-1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69호, 2025. 1.21., 일부 개정]. 교육부. <https://www.law.go.kr/법령/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

이코노미스트(25.10.21.). 운전자 75%가 민식이법 ‘처벌 잘 모른다’ …스쿨존 사고 ‘큰일’ 나. <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510210031>. (2025. 8. 19. 인출)

에듀프레스(2025.7.10.). 교사노조 “학교안전법 개정됐지만...교사 보호는 여전히 ‘반쪽’ ”.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0930>. (2025. 8. 19. 인출)

한국교육신문(2025.3.26.).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교원 면책요건 부재”.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3999>. (2025.8.19. 인출)

한국교육신문(2025.8.13.). “[학폭·생활지도 가이드] 학교안전사고 지침의 개선 필요성”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5121>. (2025.8.19. 인출)

한국교육신문(2025.9.25.). “학교안전사고 교원 면책 기준 명확화”.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5432>. (2025.10.1. 인출)

서울경제(2025.5.20.) “아이들 실망이 너무 커” ‘교사 처벌’ 포비아, 사라진 현장학습. <https://www.sedaily.com/NewsView/2GSVCZUTUR>. (2025.11.07. 인출)

드림투데이(2015.7.15.). 법도, 지침도 나왔지만..교사들 “체험학습 두렵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483>(2025.11.08. 인출)

문부과학성. (2024. 3). 学校事故対応に関する指針【改訂版】 [학교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 개정판]. 일본 문부과학성.
<https://anzenkyouiku.mext.go.jp/guideline-jikotaiou/data/outline/jikotaiouushishin-all.pdf>. (2025.6.26. 인출)

미국. (2007). Practical Information on Crisis Planning: A Guide For Schools
and Communities.[학교 및 지역사회용 위기 대응 가이드].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ffice of Safe and Drug-Free Schools.(2025.6.27. 인출)

영국 교육부. (2023).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for education,
childcare, and children’s social care settings[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
상상황 대응지침]. 영국 교육부.(2024.09.29. 인출)

캐나다 B.C.주 교육부. (2024). Maintaining School Safety: A Guide for School
and Police Personnel in B.C.[학교 안전 유지 가이드]. British Columbia
Ministry of Education & Child Care.

호주 빅토리아주. (2010. 10.) DEECD Emergency Management Guidelines [교
육·유아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 호주 빅토리아주.
https://auscamps.asn.au/download_file/force/229/366. (2025.6.26. 인출)

Bhebehe, S., Runhare, T., & Monobe, R. J. (2019). Strategic approaches for
developing a culture of safety management in schools: Indications from
literature studies. *Journal of Education and Health Promotion*, 8, 123.
https://doi.org/10.4103/jehp.jehp_206_18

Creswell, J. W. & Miller, D. L. (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3), 124-130.

이영미(2024). 유아교사의 현장학습 안전관리 현황과 인식. *아동부모학회지*, 10(2), 181-201.

이정수, 김태경, 김보일, 정재희(2016).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77-100.

심우섭, 김상범(2023). 재난대응 효율화를 위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9(3), 656-664.

방성민, 김창호(2015). 단체 테마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1(1), 63-72.

뉴시스(2025.11.13.). 학교안전사고 민·형사 면책 대상, 현장학습 보조 인력까지 포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599036?sid=102>. (2025.11.21. 인출).

[학교사고 유형화 관련 언론보도 참고문헌]

FPN(2025.03.31.). 서울 성동구 중학교 조리실 화재... 10명 연기 흡입. <https://fpn119.co.kr/232159>. (2025. 6. 17. 인출).

KBS 뉴스(2023.07.19.). 학교 실내 가림막서 추락한 초등생 증상...학생 안전관리 ‘사각’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27685&ref=A>. (2025. 6. 17. 인출).

KNN(2025.04.29.). [단독]학교에서 성추행 도주, 5개월째 못잡는 경찰. <https://news.knn.co.kr/news/article/172098>. (2025. 6. 17. 인출).

MBC 뉴스(2023.12.10.). “넌 교사도 아니야“ 초등학교 수업 중 난입한 학부모...경기교육청, ‘주거침입’ 고발.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1640_36126.html. (2025. 6. 17. 인출).

YTN(2023.04.09.). 대전 스쿨존 만취 사고 어린이 1명 숨져...운전자 영장 신청.
https://www.ytn.co.kr/_ln/0115_202304092254465841. (2025. 6. 17. 인출).

YTN(2025.05.28.). 스쿨존 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입건.
https://www.ytn.co.kr/_ln/0115_202505280917352219. (2025. 6. 17. 인출).

국민일보(2025.02.11.).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인솔교사 유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56680?sid=102>. (2025. 6. 17. 인출).

국제신문(2025.06.16.). '스쿨존' 횡단보도서 7세 아동 치고 떠난 학원 버스 운전
자 입건.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50616_99099004819. (2025. 6. 17. 인출).

뉴스1(2023.08.24.). '로켓 캔디' 만들려다 그만...서울 성북구 고교 실험실서 화
재로 학생 화상.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5149374>.
(2025. 6. 17. 인출).

머니투데이(2023.12.05.). '학폭' 강제전학...흥기 들고 이전 학교 찾은 고교생.
<https://www.mt.co.kr/society/2023/12/05/2023120519303435704>. (2025. 6. 17. 인
출).

매일안전신문(2025.09.16.). 서대구 IC인근서 4중 추돌사고...초등학생 16명 경상.
<https://idsn.co.kr/news/view/1065592521548585>. (2025.08.16. 인출).

부산일보(2025.06.05.). 부산 사하구 초등학교 교실에서 화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060516504326232>.
(2025. 6. 17. 인출).

서울경제(2023.05.12.). 체육관 천장 와르르...교사·초등생 14명 부상.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JUOHPHL>. (2025. 6. 17. 인출).

시사뉴스(2023.06.16.). 강원 홍천 수학여행 버스 7중 추돌사고...부상자 80명 분
산 이송. <https://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35650>. (2025. 6.
17. 인출).

아시아투데이(2024.05.31.). 흥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 무단 침입 남성...경찰
“응급입원 조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531010016803>. (2025. 6. 17.
인출).

아이뉴스24(2025.04.28.). [속보] 청주 고등학생 흥기 난동으로 3명 중상...가해
자는 저수지 뛰어들어. <https://www.inews24.com/view/tp/1838849>. (2025. 6.
17. 인출).

영남일보(2023.12.13.). 경산 한 중고 기숙사 불...여학생 2명 연기흡입.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31213010001780>. (2025. 6.
17. 인출).

오마이뉴스(2023.05.16.). 용인 초등학교에서 화재... 학생 14명 연기 흡입.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95
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
gn=naver_news](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2795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5. 6. 17. 인출).

인사이트(2023.04.28.). 지게차서 1.5t 낙하물 추락...학교 가던 10살 초등학생 스
쿨존서 사망. <https://www.insight.co.kr/news/437087>. (2025. 6. 17. 인출).

중앙일보(2025.02.10.). [속보] 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 용의자 교사 범행 시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2963>. (2025. 6. 17. 인출).

충청일보(2025.05.21.). 또다시 뚫린 '학교 안전'...학교 안팎 불안 커져.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4441>. (2025. 6. 17. 인출).

쿠키뉴스(2024.03.19.). 통영 제석초 화재...3명 경상, 건물 반소, 차량 19대 피해
입어.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403180309>. (2025. 6. 17. 인출).

파이낸스투데이(2023.08.04.).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칼부림 사건 발생 — 40
대 교사 피습 중상.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232>. (2025. 6. 17. 인출).

【참고】 학교 내 위기상황 발굴(학교 안전사고 유형화)

1. 해외 학교안전사고 유형화

구분		일본 ⁷⁾	미국 ⁸⁾	영국 ⁹⁾	호주 ¹⁰⁾
학교 안전사고 유형	외부인 침입	○	○		○
	흥기/폭력	○	○	○	○
	교통/통학 사고	○		○	○
	자살/정신적 위기		○		
	화재 및 각종 재난	○	○	○	○
	체험학습 사고	○			○
	실험실 사고(위험물질 노출)		○		○
	감염병		○	○	○
	테러	○	○	○	○
	사이버 위협	○	○	○	

가. 일본

- 일본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에서는 개별 상황에 따른 위기 관리 대응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등학교 중 사고	-책임교직원이나 인솔자가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학교 및 보호자에게 신속히 연락 -학생 상태에 따라 귀가 조치 또는 병원 이송 여부 판단
----------	--

7) 日本 文部科学省(2018). 学校事故対応に関する指針【改訂版】[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지침【개정판】].

8) U.S. Department of Education·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U.S. Department of Justice·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GUIDE FOR DEVELOPING HIGH-QUALITY SCHOOL EMERGENCY OPERATIONS PLAN [학교 비상대응계획 고도화 지침].

9) UK Department for Education(2023). Emergency planning and response for education, childcare, and children's social care settings[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

10) Victoria State Government(2010). DEECD Emergency Management Guidelines.[교육·유아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

교외활동 중 사고		-인솔자 또는 근처 교직원이 응급조치 후 학교 및 보호자에게 연락 / 장소에 따라 응급구조대 등과 연계 -집단활동의 경우 사고자 외 다른 학생의 안전 확보도 고려
(수상한)외부인 침입		-초동 대응→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사후 조치 단계별 세부 대응 절차 마련(불심자 여부 확인, 퇴거 요청, 신고 등)
등하교 중 교통사고		-초기 대응→2차 대응 및 대책본부 수립→사고 상황 조사→사고 당사자 및 관련 아동에 대한 지원→심리적 케어 -사전 예방 조치 강조
기상재해 (폭우, 폭설, 번개, 토네이도 등)		-각 재해의 발생 시점 및 단계별 교육위원회·학교 대응 방법 제시
지진·쓰나미		-「학교 방재 매뉴얼(지진,쓰나미 등)」 별도 제시
새로운 위기상황	탄도미사일 발사	-알럿을 통한 긴급 정보 전달 시 장소별 피난 방법 등 대응 방안 제시
	학교에 대한 범죄예고 및 테러	-학교 내 상황파악, 신속한 정보수집 및 공유, 관련 기관과의 연락 조정, 안전 확보 조치 등 방안 제시
	인터넷 상 범죄피해	-아동·청소년 대상 인터넷 범죄 피해 대응 방안 제시(피해 시 대처 방법,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교육 방법 등)

나. 미국

- 미국 교육부·보건복지부·국토안보부·법무부·연방수사국·연방재난관리청의 「학교 비상대응계획 고도화 지침」에서는 학교별로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별 특정 위험별 부속서(Annex)를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해당 지침에서 제시하는 특정 위험 및 위험 유형은 다음과 같음.

위험 및 위험 유형	예시
자연 재해	-지진, 토네이도, 낙뢰, 강풍, 허리케인, 홍수, 산불, 극심한 기온, 산사태, 쓰나미, 화산 폭발, 동절기 강수 등
기술적 위험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위험물질 누출(가스 누출, 실험실 누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 누출 -댐 붕괴 -정전 또는 단수

위협 및 위협 유형	예시
생물학적 위협	-감염병(팬데믹 인플루엔자, 광범위 결핵, 수막염 등) -식품 오염 사고(살모넬라, 대장균, 보툴리눔 등) -학교 실험실 내 유해 생물학적 물질 노출
적대적, 우발적, 인적 요인에 의한 위협	-화재 -충기난사 -범죄 또는 범법 행위 -갱 폭력 -폭탄 위협 -가정폭력 및 학대 -사이버 공격 -자살

다. 영국

- 영국 교육부의 「교육·보육·아동복지기관 비상상황 대응지침」에서는 모든 교육기관, 보육기관, 아동 사회복지 기관은 비상대응계획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을 제공하고 있음.

안전사고	예시
공중보건 관련 상황	-중대 감염병 발생 사고
악천후, 극심한 기상 현상	-폭염, 홍수, 폭풍 또는 폭설
아동, 학생 또는 교직원의 심각한 부상	-교통사고 등
화재 위험	
건물의 중대한 손상	-화재 또는 구조적 손상으로 인해 임시 보강이 필요하거나 건물 폐쇄가 필요한 경우
범죄 행위	-폭탄, 테러 위협 등
정전 또는 통신 두절	
일상 서비스 중단	
사이버 사고 또는 데이터 유출	-사이버 보안 관련 사고 등
지역사회 재난의 영향 및 지속적 후유증	

라. 호주

- 호주 빅토리아주 「교육·유아발달부 비상 관리 지침」에서는 학교 및 유아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유형별 조치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음.

유형	내용
산불 및 국지적 화재	-정보 모니터링, 학생 이동(대피장소) 결정, 학생 및 직원의 안전 확보 등의 대응 조치 안내
내부 화재	-경보 발령, 즉각적 대피,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 지원, 신고, 출석 확인, 소방대 접근로 확보, 장애학생 대피 지원 등
심각한 폭풍 및 홍수	-실내집합 지시, 안전한 위치 이동, 출석 확인, 2차 위험 요소 차단, 폭풍 이후 정상활동 복귀 절차 시행 등
감염병 및 전염성 질환	-감염병 및 전염성 질환에 대한 이해, 개인 위생 조치 등
침입자	-시설 봉쇄, 학생 상시 보호, 침입자 퇴거 요청, 긴급 신고 등
범죄 및 폭력 사고	-물리적 강화, 환경 설계, 경보 시스템, 관련 정책 안내 등
지진	-안전한 실내 대피 공간 확보, 창문 등 위험한 공간에서 떨어지기 등
위험물질 누출	-안전한 장소로 이동, 출석 확인, 안전 확인 후 정화 조치 등
폭발물 협박	-폭발물 협박 체크리스트, 통보 절차 등
교외 활동 사고	-현장책임자 지정, EMP 발동 권한 확인, 활동에 맞춘 EMP조정
통학버스 사고/차량사고	-버스별 비상 폴더 유지, 체험학습 시 별도 버스 폴더 준비 등

2. 국내 학교안전사고 유형화

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¹¹⁾

-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간한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에서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절차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재난	세부 유형
자연재난	-황사, 폭염, 태풍, 집중호수·침수, 대설·한파, 낙뢰, 산사태, 지진, 지진해일, 화산폭발
사회재난	-미세먼지, 화재, 산불, 감염병, 교통안전, 다중운집인파사고, 건축물 붕괴, 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재난
기타	-해양 선박사고, 철도·지하철 사고, 항공기 사고, 민방공(공습대피), 테러(화생방), 테러(폭발물 및 무기)

나.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서는 안전교육 구성요소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약물 및 사이버 과의존, 재난안전 등을 제시하고 있음.

대분류	중분류
생활안전	시설안전, 제품안전, 실험·실습안전, 신체활동안전
교통안전	보행자안전, 자전거안전, 오토바이안전, 자동차안전, 대중교통 안전
폭력 예방 및 신변보호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자살, 가정폭력, 유괴
약물·사이버 과의존 예방	약물 과의존, 사이버 과의존
재난안전	화재, 사회재난, 자연재난
직업안전	직업안전의식, 산업재해 이해, 직업병
응급처치	응급처치이해,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다. 최근 3년간 학교 안전사고 언론보도

- 최근 3년간 보도된 학교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외부인 침입,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하굣길(스쿨존) 사고, 학교 시설물 관련 사고, 화재 사고, 실험실습실

11) 교육부·학교안전공제중앙회(2024).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사고, 기타 교내 발생 범죄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구분	주요 내용	출처
외부인 침입	◦ 대전 외부인 침입 흥기피습 사건 -고등학교 교무실로 외부인 침입해 교사 피습	파이낸스투데이(23.08.04.)
	◦ 경기 시흥 학부모의 교사 학생 폭행 시도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무단 침입하여 학생과 교사에게 폭행 시도	mbc 뉴스(23.12.10.)
	◦ 경기 화성 강제전학 처분 고교생이 이전 학교 교사 협박 -학교출입 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머니투데이(23.12.05.)
	◦ 부산 고등학교 외부인 침입 학생 추행 사건 -고등학교로 침입해 여학생 추행	KNN(25.04.29.)
	◦ 경기 일산 초등학교 무단 침입 -흥기 소지한 채 초등학교에 무단 침입(피해자 없음)	아시아투데이(24.05.31.)
	◦ 충북 초등학교 침입해 60대 남성 자살 -초등학교 건물 내로 무단침입한 사실로 학교 안전 위협(구성원 피해 없음)	충청일보(25.05.21.)
	◦ 대전 초등학교 사망사건(하늘이 사건) -교사(명재완)의 학생 살해 사건	중앙일보(25.02.10.)
기타 교내 발생 범죄	◦ 청주 고등학교 흥기난동 사건 -17세 특수교육대상자(학생)의 범행으로 교직원 6명 부상	아이뉴스24(25.04.28.)
	◦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2022년 발생) -속초 노학동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교생이 체험학습버스에 치여 사고 -인솔 교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담임교사에게 유죄	국민일보(25.02.11)
현장체험학습	◦ 홍천 수학여행 버스 7중 추돌사고 -수학여행 버스 2대 등 추돌로 중학생 포함 약 80명 부상	시사뉴스(23.06.16.)
	◦ 대구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버스 4중 추돌사고 -앞 차의 급정거로 차량 4중 추돌, 학생 16명 경상	매일안전신문(25.09.16.)
	◦ 대전 둔산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만취 운전으로 도로 돌진, 초등학교생 4명 사상	YTN(2023.04.09.)
등하굣길·스쿨존 사고	◦ 부산 초등학교 인근 지게차 낙하물 사고 -지게차로 작업하던 중 낙하물 발생으로 초등학교생 3명 사상	인사이트(23.04.28.)
	◦ 충북 제천 스쿨존 사고 -스쿨존 사고 후 운전자 바뀌치기 시도(초등학교생 1명 부상)	YTN(25.05.28.)
	◦ 경기 양주시 학원 승합차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7세 아동과 충돌 후 뺑소니	국제신문(25.06.16.)
학교 시설물 관련 사고	◦ 여수 체육관 천장 붕괴 사고 -초등학교 수업 중 체육관 천장 구조물 붕괴로 교사와 학생 14명 부상	서울경제(23.05.12.)
	◦ 제주 초등학교 디바이더 추락 사고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디바이더(전동가림막)에 초등학교생이 매달리다 추락	kbs뉴스(23.07.19.)
화재	◦ 경기 용인 초등학교 교실 화재 -용인 초등학교 교실 화재 발생으로 학생 14명 연기 흡입	오마이뉴스(23.05.16.)
	◦ 경북 경산시 중고등학교 기숙사 화재 -기숙사 2층 베란다 화재, 플라스틱통에서 종이 태우다가 발생	영남일보(23.12.13.)
	◦ 경남 통영 제석초 쓰레기장 화재 -학교 쓰레기장에서 화재 발생, 3명 연기 흡입	쿠키뉴스(24.03.19.)
	◦ 서울 성동구 중학교 조리실 화재 -급식 준비 중 화재 발생으로 10명 연기 흡입	FPN(25.03.31.)
	◦ 부산 초등학교 교실 화재 외 다수 -교실 내 어항 산소발생기에서 발화, 인명피해 없음	부산일보(25.06.05.)
	◦ 서울 성북구 고등학교 과학 실험실 사고 -로켓캔디(설탕 주연료) 제작 중 비커 과열로 화재, 학생 1명 부상	뉴스1(23.08.24.)

3. 학교 안전사고 유형화

- 국내외 교육기관 안전사고·재난 지침 및 매뉴얼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교 안전사고 유형과 최근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언론 분석 등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학교 안전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음.

유형		정의
자연재난		항사, 폭염, 태풍, 집중호우, 한파 등 자연현상으로부터 기인한 기상악화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회재난		화재, 산불, 감염병, 다중운집 인파사고, 건축물 붕괴 등 인적 요인, 관리 부실, 기술적 오류 등 사회 시스템 문제에서 기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의한 안전사고
(교외활동)체험학습 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외 체험활동 중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
등하굣길 교통사고		학생이 등교 또는 하교 중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전거·킥보드 사고, 스쿨존 사고, 통학버스 승하차 사고 등 학생의 통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교통사고
새로운 위기상황	외부인 침입	학교 출입 권한이 없는 외부인이 학교 내에 무단 침입하여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흥기난동 및 폭력	학교 내에서 위험물·흉기·기타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즉각적이고 신체적 위협을 가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에 대한) 테러 위협	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의적 공격 행위 또는 그러한 공격을 암시·예고하여 학교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상황 및 사고